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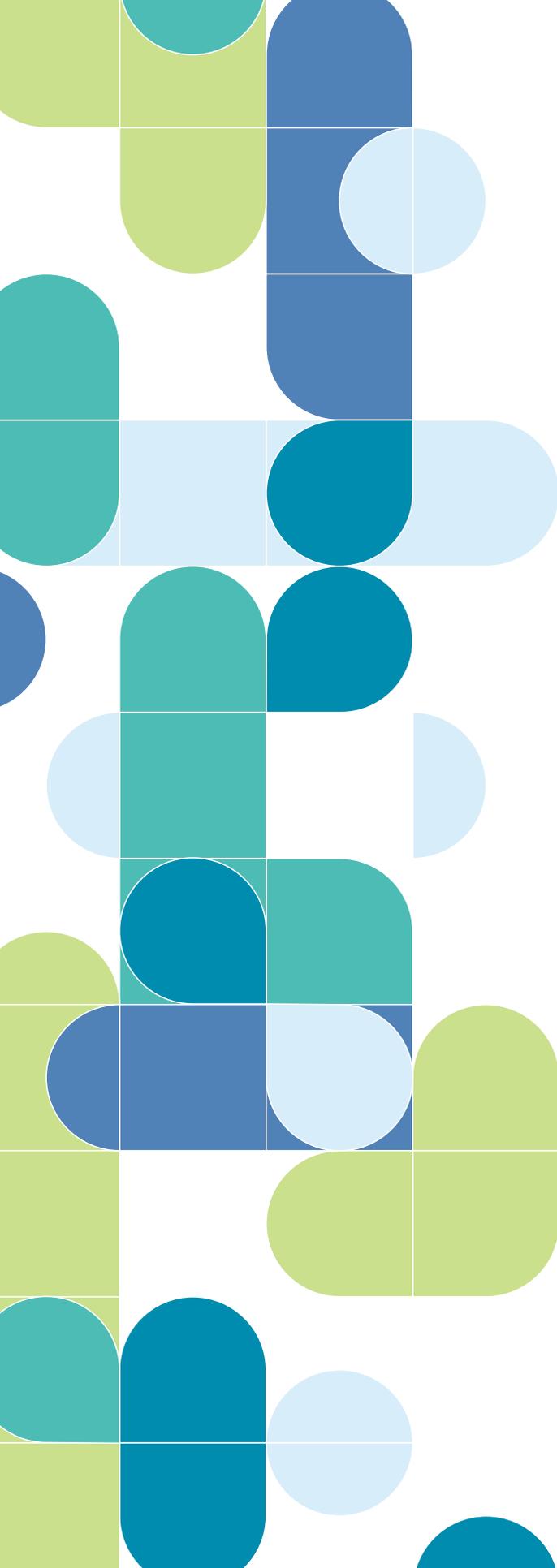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2

#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2

#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2022. 12.

김대권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 미션과 비전

###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 비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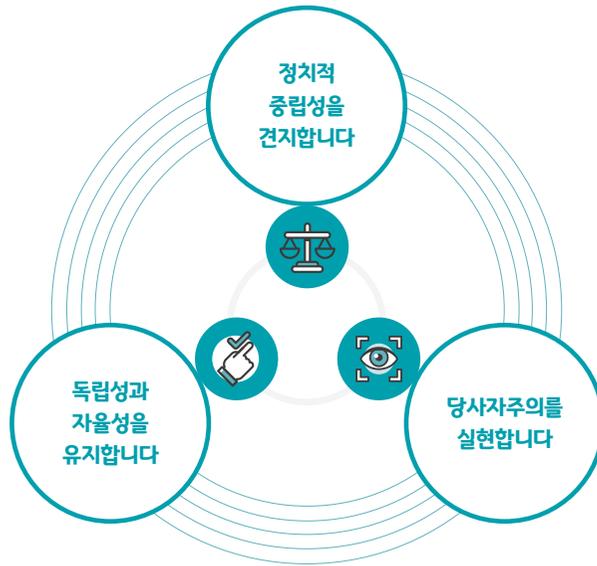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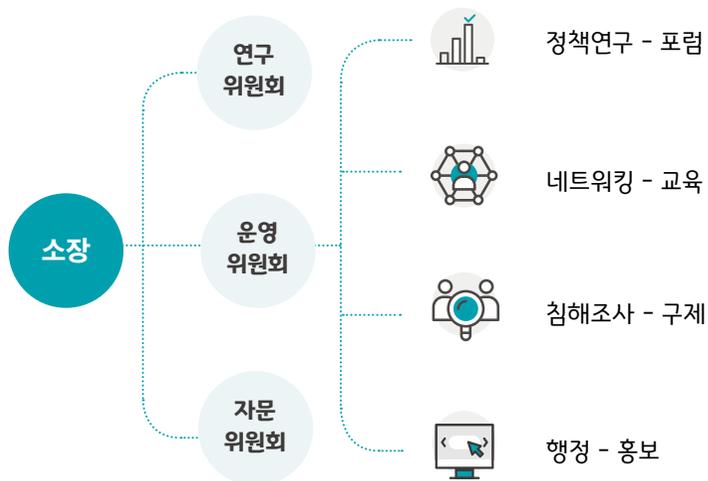


## 운영주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 2013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및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공론화



###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 2019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 2020 이주민과 선주민의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거버넌스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위원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과 의미의 차별성은 분명합니다.

2019년에 출범, 올 해로 4년차에 접어든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차별성은 ‘이민의 시대’, ‘이민 국가’ 대한민국을 전제로 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민’이란 ‘국경을 넘어 주요한 삶의 공간을 이전’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정부의 정책 담론은 사실 이미 ‘이민 국가’ 대한민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2)’을 소개하는 공식 문건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외국인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이민 정책’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하지만 국민의 오해를 우려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해 본격화된 ‘이민청’ 신설 논의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민 국가’로의 도정이 공식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민 사회란 이민자들이 단순히 ‘외국인’, ‘방문객’ 혹은 ‘도구적인 기능의 제공자’ 라는 제한된 위상과 역할, 정체성을 벗어나 체류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책무와 소속감, 참여와 기여의 기회를 공유하는 평등하고 능동적이며 총체적인 삶의 주체로 새롭게 자리매김되는 사회를 뜻합니다.

이민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와 재능, 상상력과 기여의 방식이 다양화됨으로써 리스크가 분산되고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은 증폭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반면 익히 알려진 약점은 문화적 갈등이 증폭되어 분열과 분쟁의 위험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도래하는 이민 사회에 대한 선이해에 근거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세계 차원에서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의 역량을 최적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자원적인 조율 역량이 바탕이 될 때에만 다양성은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 수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매우 자랑스럽고 ‘높은 뜻’으로 출범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공식적인 이민 국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비이민사회’ 대한민국 사이의 좁히기 어려운 간극에 대한 ‘현타’를 경험했어야만 하는 우리 위원회의 어려움에 대해 고백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올 해 우리는 18건의,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건의 대부분은 ‘이주자의 거주민(체류자)에서 주민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호주체적이며 자원적으로 조율’해 보자는 애초의 우리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인 제도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올 해 우리 위원회가 다룬 18가지의 안건 가운데 무려 14개, 곧 78% 달하는 안건은 명명백백한 제도적 차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 의무의 주체로서는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주체로서는 불평등한 보험, 연금, 세금 제도의 문제, 주민으로서의 참여와 기여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의 문제 등 '이민청' 논의가 무색할 정도의 민망하고 노골적인 제도적 차별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던 셈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문화적 사안'들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쌍방이 평등하게 다툼의 주체로 연루'되는, 말 그대로 '문화적 갈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인 '문화적 폭력'에 가까운 사안들이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이미 예약한 키즈 카페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강제 전학을 권고'한다든지, '통번역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다든지,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존중없이 일방적인 합의를 대행'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은, 갈등 당사자의 주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사회가 '불가피하고, 필요하며, 절실하다'고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이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이웃이요, 친구요, 동료요, 파트너요,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올 한 해 확인한 명증한 팩트는 이민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타자'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투명인간'과 같은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의 조울증적인, 이민사회 담론과 그를 용인하려 하지 않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엄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도 다양성과 인권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주리라는 확신과 희망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매번 달레마적인 안건을 마주하고,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해법과 조정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극상의 난이도 속에서, 언제나 우정어린 에너지를 나누어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함께 해주신 이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현장과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전후에 더욱 분주하게, 현장의 상황을 전달해주시고, 조정안의 현실 타당성을 검증해주시는, 네 분의 조정지원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라는 두꺼운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우리 위원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진정한 참고인 여러분들의 용기와 정의감에 고개 숙여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회기 때 보다 체계적인 준비, 치밀하고 끈질긴 조사와 후속 작업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정체성과 역량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심어준, 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인 우리 센터의 김대권 팀장께서는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CONTENTS

---

<b>I</b>	<b>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b>	<b>14</b>
----------	----------------------	-----------

---

<b>II</b>	<b>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b>	<b>18</b>
1.	처리 안건	18
2.	사례별 조정 내용	20

---

<b>III</b>	<b>조정 사례들</b>	<b>30</b>
1.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30
2.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35
3.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37
4.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48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51
6.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56
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60
8.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70
9.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박탈 문제	78
10.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 제한 및 부당한 민원	82
11.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83
12.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87
13.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91
14.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95
15.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101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105
17.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110
18.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115

---

<b>IV</b>	<b>평가와 과제</b>	<b>142</b>
-----------	---------------	------------

---

# CONTENTS

## 표목차

<표 I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	14
<표 I -2>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	15
<표 I -3>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	15
<표 I -4> 2021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	16
<표 II -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	18
<표 II -2> 무료 PCR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관련 조정안 .....	20
<표 II -3>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관련 조정안 .....	20
<표 II -4>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관련 조정안 .....	21
<표 II -5>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관련 조정안 .....	21
<표 II -6>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관련 조정안 .....	22
<표 II -7>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관련 조정안 .....	22
<표 II -8> 실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관련 조정안 .....	23
<표 II -9>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관련 조정안 .....	23
<표 II -10>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관련 조정안 .....	24
<표 II -11>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관련 조정안 .....	24
<표 II -12>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관련 조정안 .....	25
<표 II -13> 외국인 간 불법 비자 변경 사기 예방을 위한 조정안 .....	25
<표 II -14>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관련 조정안 .....	26
<표 II -15>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관련 조정안 .....	26
<표 II -16>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관련 조정안 .....	26
<표 II -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관련 조정안 .....	27
<표 II -18>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관련 조정안 .....	27
<표 II -19>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관련 조정안 .....	28

<표 III-1>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 및 이용인 현황 .....	31
<표 III-2> 경기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 .....	36
<표 III-3> 기숙사 관련 관계 법령 .....	46
<표 III-4> 외국인 선불유심구입 관련 통신사 문의결과 .....	49
<표 III-5> 경기도 내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현황 .....	52
<표 III-6>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101
<표 III-7>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보호관련 조항 .....	112
<표 IV-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및 관련 기관 수용 여부 .....	143

---

## 그림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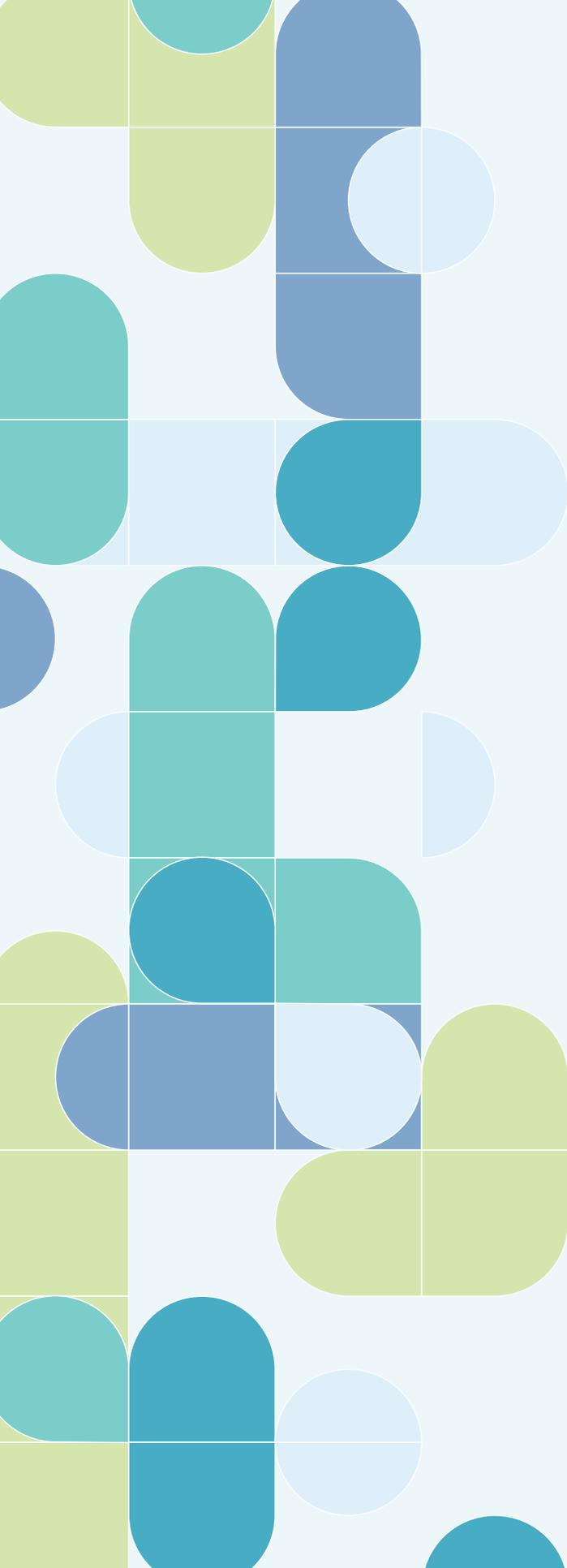
[그림 II -1]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19
[그림 II -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28
[그림 III-1]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87
[그림 III-2] 제4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140

---

## 사진목차

---

[사진 III-1] 고공에서 안전모 없이, 용접모와 안전 벨트 없이 용접줄에 의하여 작업하는 모습 .....	105
[사진 III-2] 전신주 높이의 고공(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일하는 모습 .....	105
[사진 III-3] 공장 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동료 필리핀 근로자들과 일하는 모습 .....	10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2

# 다양성소통 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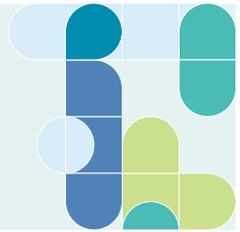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I

---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개요



# I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요

## ①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사업 개요

### 정책 목표

-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참여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 및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함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통합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시킴

###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사업 내용 | 이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공공 부문 종사자, 연구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총 4회의 조정위원회 및 조정 지원단 실무 회의. 지역 사회 내·외국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 발굴 및 조정안 제시. 최종 보고서 작성

소요 예산 | 14,844,070원

###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구성

조정 위원 | 지역, 성, 활동 분야 등을 고려, 이주민,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학계, 공공 부문 등 총 14명으로 구성함(공공 5명, 민간 7명, 학계 2명) <표 I-1·2>

표 I-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이정호	성공회 살롬의 집	대표	위원장
2	연종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과장	당연직
3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당연직
4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울	변호사	
5	김용국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6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7	김학래	원곡동 통장협의회	회장	
8	라오너	다모의료엔문화관광 협동조합	이사	
9	박정해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	

10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11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대표	
12	이경숙	신한대학교	교수	
13	쿠람아프탑(로저)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	목사	
14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조정지원단 구성

**표 I-2** 다양성소통조정지원단 구성

연번	이름	소속	직위
1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안산)	실장
2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안산)	센터장
3	이기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4	우레(Beejinkhuu Uurtsaikh)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2022년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총 4회 개최, 18건 처리, 위원 40명 참석, 진정인 및 참고인 11명 참석 <표 I-3>  
전년도에 비해 3건 증가

**표 I-3**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추진 현황

회차	일자	장소	참석 위원	조정안 수
1	3. 30.	온라인화상회의	12명	총 5건
2	6. 9.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포천)	10명	총 6건
3	9. 2.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9명	총 4건
4	11. 2.	경기글로벌센터(부천)	9명	총 3건
<b>계</b>			<b>40명</b>	<b>18건</b>

**2022년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

제조업 및 업업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청소년, 미등록체류자, 보호일시  
해제외국인 등 다양한 이주민과 관계된 갈등 사례 18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정안을  
제시함 <표 I-4>

**표 I-4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안건과 외부 참여자 현황**

회차	조정안건	외부참여자
1차	이주노동자 헛터 입소자들도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켜 줄 것	진정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를 위한 전담 다국어 콜센터(경기도 혹은 시군별) 운영 필요	진정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고용허가제(E-9) 대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불법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였을 때, 대응방안 부재	참고인 이종민 대표(파주살림의집)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일시해제로 나온 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문제	진정인 이** 무*** (보호일시해제외국인) 참고인 김대권 팀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포 필요	참고인 임혜광 과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2차	언어 소통의 제약으로 시책 및 복지관련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주민들	진정인 최별님(부천시도당동주민)
	실직한 이주노동자들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 홍보 필요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참고인 송인선 대표(경기글로벌센터)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민원	진정인 T**** (중고국적 외국인)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3차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참고인 은수연 실장(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 못해 유족연금지급 거부된 결혼이주여성의 구제	참고인 킨 메이타 대표(수원이주민센터)
	연말정산 세무자료 제출이 어려워 세금환급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방 문하였으나 거절당한 G-1 체류자격 외국인	참고인 박선희 국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차	기숙사 주소가 도시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어업노동자	참고인 이정혁 대표(안산외국인노동자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이 불허되는 불합리함	참고인 최경식 대표(글로벌미션센터)
	경기도 내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방지대책 마련의 시급성	진정인 김용국 센터장(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불조정에 합의한 법률구조공단	참고인 박현진 활동가(의정부EXODUS)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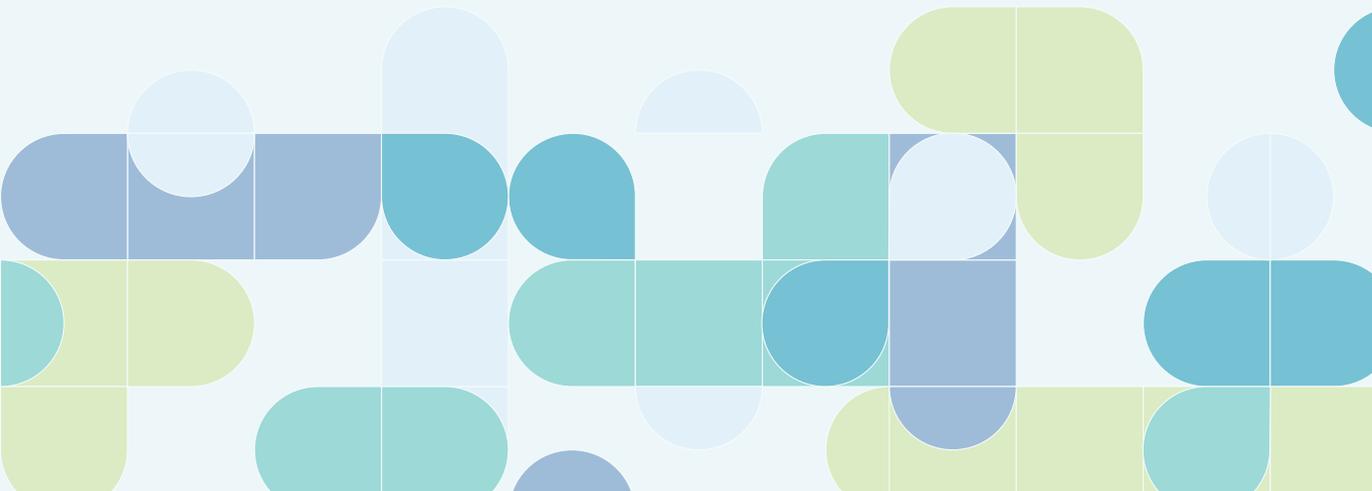
---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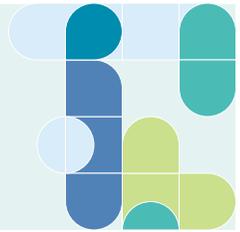
---

##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1. 처리 안건
2. 사례별 조정 내용



## II. 처리 안건과 조정 내용



### ① 처리 안건

2022년 정규적인 위원회 총 4회 개최, 서면 위원회 1회 개최, 18건의 조정안을 처리함. 조정 안건의 주제와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II-1>

**표 II-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

회차	안건	처리결과
1차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관련 사업 건의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 이주민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에 재난종합지원 통역센터를 포함시키기로 함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 도에 유희시설 활용 등 의견 전달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 보호일시해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건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 관련 부서(경기도교육청) 질의 및 개선건의
2차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 현재 언어 다양성 자원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다언어적인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하기로 함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 관련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 관련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 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민원	▶ 당사자가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해당 카페에 구두 경고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 관련 부서(경기도교육청) 질의

3차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 관련 부서(국민연금공단) 제안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 관련 부서(국세청) 제안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 관련 부서(고용노동부) 제안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 관련 내용 재확인하기로 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 관련 부서(고용노동부) 제안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관련사업 제안하기로 함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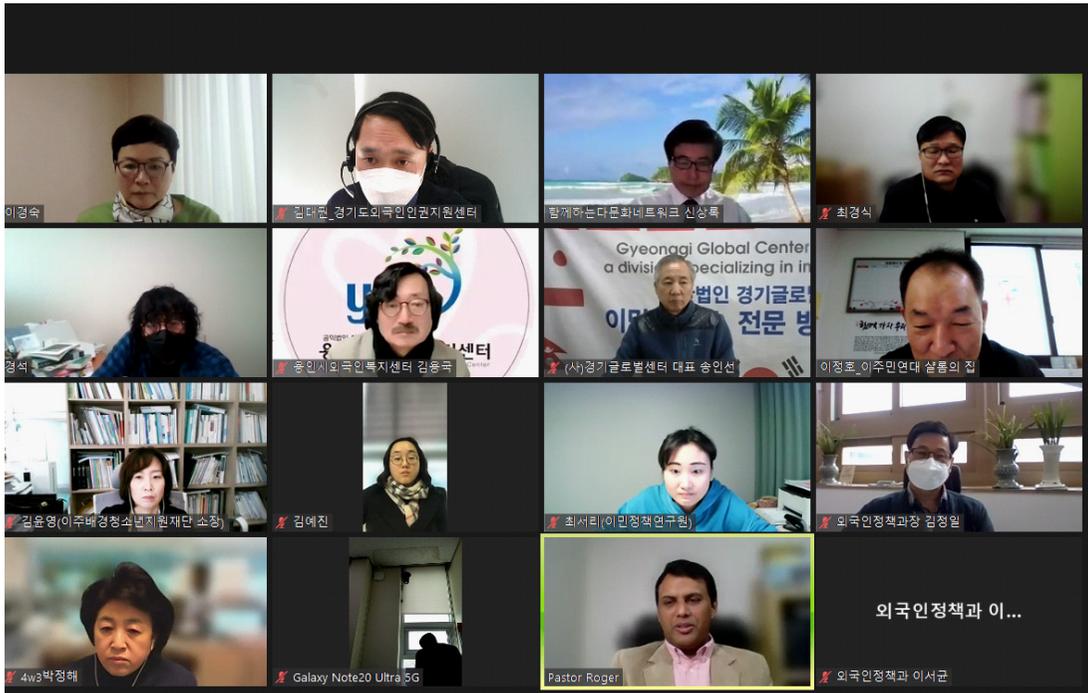


그림 II-1 제1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② 사례별 조정 내용

### 1)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

이주노동자 쉼터는 집단 생활시설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임에도 입소 전에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음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2>

**표 II-2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노동자 쉼터에서의 무증상자에 의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입소를 원하는 자들에게 쉼터나 이주민 센터의 확인을 받아 무료 PCR 검사 실시</li> <li>▶ 무료 PCR 검사가 어렵다면 이주노동자 쉼터에 자가진단키트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 지정토록 건의</li> </ul>

### 2)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외국인이 코로나19 양성 확진되어 재택 자가격리될 경우 전화 약처방이 가능한 동네병원 안내 등에 대해 다국어 안내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3>

**표 II-3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들이 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나라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 들어서는 민선 8기 집행부에 외국인 재난종합지원 통역센터를 제안하기로 함</li> </ul>

### 3)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겨울철마다 컨테이너 기숙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고용허가제 대상(E-9)노동자가 아닌 경우 위험하고 열악한 기숙사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별다른 규율이 없음에 대해 참고인(파주살롱의집 이종민 대표)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4>

**표 II-4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에 ‘불법가건물 등 미신고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삽입</li> <li>▶ 「근로기준법」 벌칙 상향조정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li> <li>▶ 도내 제조업체 중심으로 불법 가건물형태의 기숙사 실태 파악, 자진철거 및 시설 개선 유도하는 시책 도입</li> <li>▶ 영세업체들의 경우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시설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도에 제안</li> </ul>

### 4)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일시해제로 가석방된 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김대권 팀장)의 설명과 진정인의 진술 영상을 보고 논의함 <표 II-5>

**표 II-5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일시해제결정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적어도 선불폰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내이동통신업체들의 약관수정 건의</li> <li>▶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선불유심폰을 일괄 개통하여 보호일시해제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도록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외국인도 선불폰 개통하는 사례가 있으니 추가 확인 필요</li> <li>▶ 향후 보호일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의견 전달</li> </ul>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이주배경 학생들 중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참고인(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임혜광 과장)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6>

**표 II-6**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포하도록 교육청에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포하도록 교육청에 건의 (포천시 사례 활용)</li> </ul>

**6)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이주민들에게 시책 특히 복지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어려운 점에 대한 참고인(최별님 부천시 도당동 주민)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7>

**표 II-7**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에 다국어 SNS계정 운영 권유</li> <li>▶ 지자체에 다국어 지역안내책자 배포사업 권유</li> <li>▶ 시정홍보용 전광판 활용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SNS 기자단 기능 확대</li> <li>▶ 경기도 언어다양성 자원조사에 공적시스템 안에서 다언어 정보서비스 제공방안 포함 건의</li> </ul>

## 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실직한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8>

**표 II-8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 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 가능함을 본인에게 안내해야 함(카카오톡, 문자 등 활용)</li> <li>▶ 외국인노동자 입국시 사전취업 교육에 사회보험 관련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li> <li>▶ 구직활동 중인 이주노동자가 방문하게 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제안</li> </ul>

## 8)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국내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청구하는 문제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으로부터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표 II-9>

**표 II-9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만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안 대로 관련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론화</li> </ul>

### 9)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하여 체류자격이 취소된 결혼이주여성 사안에 대해 참고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의 진술을 듣고 논의함 <표 II-10>

**표 II-10**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체류자격 회복을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권고 또는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 내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한 의결을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원서 작성하여 전달</li> </ul>

### 10)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이주민이 키즈 카페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카페 사장의 제지로 이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안산글로벌 청소년센터 실장 은수연)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1>

**표 II-11**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캠페인 필요</li> <li>▶ 편의시설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 필요(상점 입구에 차별 반대 스티커 부착 등)</li> <li>▶ 경기도차별금지조례 제정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해당 키즈카페에 항의하고 언론에 기사화시켜 사회적 환기를 일으키기로 함</li> </ul>

## 11)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유받고 충격을 받은 사안에 대해 참고인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 은수연)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2>

**표 II-12**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차별금지 명문화</li> <li>▶ 교사의 다문화 및 인권감수성 실효적 제고 방안 마련</li> <li>▶ 이주민을 대상화시키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양, 세계시민교육으로 교육 프로그램 재구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다문화 및 인권감수성 실효적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도입</li> </ul>

## 12)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국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 못해 유족연금지급이 거부된 미얀마 국적 결혼이주여성의 사안에 대해 참고인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마킨메이타)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3>

**표 II-13**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해당국의 상황상 관련 서류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적용 예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국민연금공단)에 개선 건의</li> </ul>

### 13)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홈택스, 위택스 서비스에 이주노동자들이 접속하기도 어렵고 다국어서비스가 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대해 참고인(글로벌미션센터 대표 최경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4>

**표 II-14**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에 유튜브를 활용한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16개국)의 언어로, 연말 정산 안내 동영상 제작 권고. 전체 언어로 안내 영상 제작이 어렵다면 도입규모 순으로 상위에 있는 국가 언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에서의 제작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국세청)에 개선 건의</li> </ul>

### 14)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서비스

G-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거절된 노동자 사례에 대해 참고인(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 박선희)으로부터 듣고 논의함 <표 II-15>

**표 II-15**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서비스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E-9과 H-2) 이외에 취업활동자격이 있는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도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고용노동부)에 개선 건의</li> </ul>

### 15)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2022년 1월부터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외국인 어업노동자 사례에 대해 참고인(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이정혁)으로부터 듣고 논의함 <표 II-16>

**표 II-16**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의 경우처럼 작업장 인근에 있는 기숙사의 주소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농어업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사업주의 확인이나 보증을 받아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본 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촉구</li> </ul>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안전장비도 없이 고공작업에 투입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재해발생 전에는 이 사유로 사업장 이동이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참고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최경식)의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7>

**표 II-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p>▶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변경 사유에 “사용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는 경우”를 추가 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p>	<p>▶ 관련부서(고용노동부)에 개선 건의</p>

**17) 경기도 내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외국인 복지 센터 소속 통번역사가 사업주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사건에 대해 진정인(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김용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8>

**표 II-18**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p>▶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건의하여 외국인 지원기관에 특화된 감정노동보호 컨설팅, 매뉴얼 제작,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p>	<p>▶ 경기도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와 협업하여 상담 활동가들을 위한 감정노동보호프로그램 운영</p>

### 18)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조정합의를 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의정부EXODUS 활동가 박현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논의함 <표 II-19>

**표 II-19**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관련 조정안

위원회 조정안	최종 제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법률구조 공단에 강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권고</li> <li>▶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언론에도 취재 및 보도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대책마련 권고</li> </ul>



**그림 II-2**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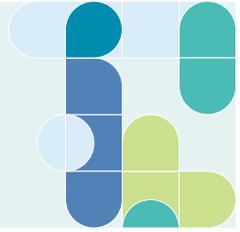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III

## 조정 사례들

1.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2.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3.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4.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6.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7.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8.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9.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10.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11.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12. 본국 사정으로 혼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13.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14.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15.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17.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18.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 III. 조정 사례들



#### ①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 진정 내용

- 이주노동자 쉼터는 이주노동자 집단 생활시설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임
- 2021년 12월 이전 입소자들의 경우, 입소 전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입소하여 기존 입소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정부의 지침이 바뀜에 따라 모든 입소대상자가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만 무료 PCR 검사를 받게 해 주고 있음

##### 자체 조사

- 경기도 내에는 공식적으로 15개 시군구에서 35개소의 이주민 쉼터가 운영중이며, 수용인원은 560여명에 달함 <표 III-1>

표 III-1 도내 외국인노동자 센터 및 이용인 현황

시 군	시설명	운영단체명	수용인원
15개	35개소		562
수원(3)	외국인근로자센터 OUR HOME	(재)지속가능경영재단	25
	외국인센터	개인	8
	네팔인 근로자센터	네팔인 근로자센터	20
고양(1)	외국인센터(2)	(사)승리다문화비전센터	12
하남(1)	외국인센터	(사)국제외국인센터	3
용인(1)	용인 이주노동자센터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12
성남(1)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	8
부천(2)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6
	부천이주노동자 복지센터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6
안산(10)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사)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120
	안산 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16
	글로벌미션센터	글로벌미션센터	15
	지구인의 정류장	지구인의 정류장	20
	예수마을선교교회	예수마을선교교회	25
	소금밭교회	소금밭교회	20
	온누리M센터	온누리M센터	60
	안산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 중국동포의집	15
	뉴라이프네팔교회센터	뉴라이프네팔교회센터	15
	순복음중화교회	순복음중화교회	10
남양주(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4
평택(1)	평택 외국인복지센터	평택 외국인복지센터	10
시흥(1)	외국인근로자 단기센터	(사)복)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8
김포(3)	김포 이주민센터	(사)국경없는마을	4
	김포마하이주민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부	6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한국천주교 인천교구	6
오산(1)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5
구리(1)	구리엑소더스	천주교의정센터, 부교구	5
광명(1)	광명네팔센터	광명중앙교회	10
광주(7)	세상의빛이주민센터(남, 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상의빛선교교회	10
	광주 이주민나눔센터	광주 이주민나눔센터	12
	폭력피해이주여성센터	함께하는 이웃	15
	월드미션센터	월드미션센터	2
	(재)한국이주노동재단	(재)한국이주노동재단	25
	(사)올프렌즈	(사)올프렌즈	8
	임마누엘다문화센터	임마누엘다문화센터	16

자체 조사

- 2021년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입소자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 관련 보도자료

 		<b>보 도 자 료</b>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 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1. 1. 10.(일)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김병철 과장	담당자	최연준 사무관 02)2110-4079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호외국인 1,065명 전원 음성판정 받아  
- '21. 1. 4. ~ 1. 7. 전수 검사 실시 -**

-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21. 1. 4.부터 1.7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 또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21. 1. 6.부터 직원, 사회복지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1. 1. 10.(일), 14:00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100명 이상 보호 중인 화성·청주·여수·인천 근무자 모두 음성
-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 3월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였고,

- 이와 관련 11월에는 상시착용 지시, 12월에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원칙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21. 1. 5.부터는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둘째, 법무부는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여 오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에서 있었던 밀실 유희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폭력사건 등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천안코로나19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79명으로 늘어”(20. 12. 27. 언론 보도)

○ 셋째,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합니다.
- 2차 PCR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를 해제

하고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킴으로써, 신규입소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탄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조정위원회  
논의**

- 비슷한 외국인 집단생활시설인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입소자들 전원 무료 PCR 검사 실시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 쉼터도 집단 생활 시설이며 외부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집단 감염 시 사회적 파장은 더 클 수 있음
-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예산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임

**조정위원회  
제안**

- 보건소 외에 이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을 지자체마다 지정하도록 제안

**조치**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PCR 검사사업 제안(2022. 4. 8.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사회공헌팀)

**답변**

- PCR 검사비용이 종합병원급은 1만원이고, 비보험일 경우 8만원이라 예산부담이 큼. 1차 병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건강보험적용시 5천원)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임

---

**② 전담 콜센터 부재로 인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양성자) 관리 취약**

---

**진정 내용**

- 최근 이주노동자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이 코로나 양성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임
- 이주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신속항원 키트로 양성이나온 이후 대처 방안에 관한 보건소 안내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자가 격리만 지시하지 약처방이나 음식 제공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혼선을 빚거나, 자가격리 중에 나와서 음식이나 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
-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건소에 외국어 통역자들이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최근에는 그마저 없어진 상태임
- 시군구에 설치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도 외국어 통역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전화연결도 어려운 실정임

**자체 조사**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았으나 다수 센터들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외국인 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으며 보건소로 연결 안내함. 다만, 수원시의 경우 영어 통역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다른 언어는 경기도콜센터(120) 통역서비스 통해 3차 통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 <표 III-2>

**표 III-2 경기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

지자체	전화번호
수원시	(주간) 031-228-4600, (야간) 031-369-2351~4
하남시	031-5182-1263~8
용인시	031-324-9700
군포시	031-389-4910
고양시	031-8075-8941~8950
오산시	031-8036-6044~5
성남시	031-750-1142,1155~8
양주시	031-8082-7777, 4013, 031-8082-4013
화성시	031-5189-1200
이천시	031-645-1982~4
부천시	032-625-8887~9
구리시	031-550-8446~7
남양주시	031-590-1345
안성시	031-678-0727~8
안산시	(상록) 031-369-1827, (단원) 031-369-1855
의왕시	031-345-3991~3
평택시	031-8024-5930
포천시	031-538-4956~8
안양시	031-8045-7600
양평군	(주간) 031-770-2304, (야간) 031-770-2221~2
시흥시	031-428-0060
여주시	031-887-2572, 2577
김포시	031-5186-3120
동두천시	031-860-2616~2621
파주시	031-820-7330
과천시	031-3677-2223~4
의정부시	031-870-6011
가평군	(주간) 031-580-2600~1, (야간) 031-580-2222
광주시	031-760-8473~4
연천군	031-839-4055
광명시	(주간) 02-2680-2898, (야간) 02-2680-2222

## 조정위원회 논의

- 외국인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그 나라 언어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함
-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가 파악되었으면 함

## 조정위원회 제안

- 새로 들어서는 민선 8기 집행부에 기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비롯해 119와 112까지 통합된 외국인 재난종합지원 통역센터를 제안하기로 함

### ③ 비 고용허가제 대상 (E-9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침해

#### 진정 내용

- 2022년 2월22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나 숙소에 있던 인도 국적 A씨(46세)가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사망한 인도 국적 A씨는 2019년 4월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하며 컨테이너를 개조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변을 당하였음
- A씨는 고용허가제(E-9) 노동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 자격을 가진 노동자(G-1비자 소지자)였음

자체 조사

- 경기도 파주시 기숙사 화재 사고 관련 언론보도 (경인일보)

오피니언 | 인연 | 지역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2022.12.16 (금) 09:10 10.2°C 로그인

사회 재난·사건사고

# [뉴스분석] 컨테이너서 메아리친 ‘외국인 노동자의 사이렌’

파주 한 식품공장 숙소서 화재, 인도 국적 1명 숨져

입력 2022-02-22 18:52:45



배재홍기자  
j.bj@yeongin.com  
배재홍기자 기사모음



불에 탄 컨테이너 숙소 내부. 2022.2.22. 배재홍기자 j.bj@yeongin.com



는 버크 앞에서 공명함에 그치고 있다.

22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0시8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숙소에 있던 인도 국적 A(46)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3년전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이 파악한 화재자 진술에 따르면 불이 난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살러달라"는 외침을 들은 목격자가 A씨를 구조하고자 문을 개방하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문을 여는 데 실패한 목격자는 창문을 통해 A씨를 바깥으로 빼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창문에 설치된 최창살 탓에 이마저도 여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한 뒤 컨테이너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은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을 찾은 A씨 동생의 뒷모습. 그는 티셔츠 마의를 당겨서 연거푸 뒤늦게 화한다. 2022.12.22 (매재중기자 jhb@kyeangn.com)

이날 오전 11시경 찾은 화재 현장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타고 남은 옷가지와 가구, 전기난로 등을 통해 겨우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A씨의 동생(44)은 "이렇게 큰불이 나 할까지 죽게 만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인도에 절의 아내와 6살 딸이 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가 뺨을 당한 컨테이너는 회사가 숙소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컨테이너는 파주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화재 위험에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이날 컨테이너 숙소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같은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존재하지 않았다. 화장실 같은 필수 시설을 갖추지 못해 숙소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보였다.



오피니언 | 인선 | 지역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2022.12.16 (금)  
여주 -10.2℃

로그인



출리스크라임이 실시된 컨테이너 외부, 3022.2.22. 배재홍기자 jhb@kyeongin.com

A씨처럼 외국인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정식 숙소가 아닌 곳에서 묵음을 잊는 비극은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포천시외의 논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고(故)숙원(31)씨가 난방이 안 되는 열악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일이 있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A씨에게 닥친 비극을 막을 만큼의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유정 김이찬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숙소는 안전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가설건축물 자체를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가능하게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숙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재홍기자 jhb@kyeongin.com

<요약기사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도자료



-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 장 엄대섭(044-202-7157)  
사무관 김형숙(044-202-7148)
-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 장 이민재(044-202-7553)  
사무관 김경민(044-202-7528)
-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044-201-1531)  
사무관 김일수(044-201-1538)

☞ 보도일시: 2021. 1. 6.(수) 배포 즉시  
☞ 총 8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12.7%
-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속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 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 <붙임 참고>

-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 주거시설(2.6%)

\*\* 가설 건축물을 속소로 제공하는 이유로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으로 답변함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 \* 부부, 같은 성(性)만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1명인 경우에 남녀 침실을 미구분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음
-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 \*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
- 한편,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 \* 지방관서별 설치, 위원장 1명(고용허가제 담당 부서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노사외국인 지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2> 농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 \* 주거시설 전경,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냉·난방 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 소방시설, 수납공간 시각 자료
-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 '20.8.3.~11월, 비닐하우스·농막 등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발·단속 기추진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이용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사법처리 등 조치

**<3>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 농어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농식품부)하고,
  - \*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개소당 15백만원) 지원('21년 10개소 시범실시→ 대상 확대 검토)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확대(해수부, 6→7개소)도 추진한다.
- 또한,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하여 사업주의 주거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우수 주거시설 항목: 주거시설이 주택·아파트, 1실 4인 미만, 숙박비용 사업주 부담, 근로기준법 시행령 모두 준수 등 10개 항목

#### <4> 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EPS 현장 컨설팅: 노무관리, 직장생활 애로사항 등 가이드 역할 수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출입국사무소, 외국인력상담센터, 농협 등) 연계

\*\* 지역: 5개 → 33개 지역, 전담자: 12 → 47명 확대(산업인력공단)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정·투명한 거래	 노동조합	 노동조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김형숙 사무관(044-202-7148),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사무관(044-202-7528), 농림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일수 사무관(044-201-15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채 조사

- 기사사 관련 관계법령 (「건축법」, 「근로기준법」) <표 III-3>

표 III-3 기사사 관련 관계 법령

법령	조문
「건축법」	<p><b>제20조(가설건축물)</b></p> <p>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1. 4. 14., 2014. 1. 14.&gt;</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 1.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li> <li>2. 4층 이상인 경우</li> <li>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li> </ol>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 14.&gt;</p> <p><b>제110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li> </ol>
「건축법」 시행령	<p><b>제15조(가설건축물)</b>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lt;개정 2012. 4. 10., 2014. 10.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li> <li>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닐 것</li> <li>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li> </ol> <p>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li> </ol>
「근로기준법」	<p><b>제100조(부속 기사사의 설치·운영 기준)</b> 사용자는 부속 기사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사사의 구조와 설비</li> <li>2. 기사사의 설치 장소</li> <li>3. 기사사의 주거 환경 조성</li> <li>4. 기사사의 면적</li> <li>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전문개정 2019. 1. 15.]</p> <p><b>제114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li> <li>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li> </ol>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전문개정 2019.7.9]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7.9]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7.9]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목개정 2019.7.9]

## 조정위원회 논의

- 2021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대책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따라서 이 대책은 기존 고용허가제 밖에 존재하는 특례고용허가노동자(동포), 난민(F-2-4),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지위자(G-1-6), 유학생(D-2)등과 미등록상태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에게는 건축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큰 사고로 이어져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신고의무와 관련 법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컨테이너 등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체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 규모라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함(사고가 난 파주시 K식품 역시 상시 근로자수 2명의 영세업체임)
- 「근로기준법」에도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이 있으나 컨테이너 등 불법 가건물 사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은 없어 보임

### 조정위원회 제안

-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숙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정책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주중에 비어있는 펜션 등 유휴시설을 지자체에서 연결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사업주 의식 전환 등 사업주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 직접 기숙사용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함

## ④ 보호일시해제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

### 진정 내용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신병 치료 등의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허가를 받아 나오게 되는 경우 적절한 신분증이 없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음
-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취지가 신병 치료를 비롯한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 상태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므로 해당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출석하여 거소와 근황을 보고해야 함
-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관리 편의를 위해서도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 부득이 출석이 어려울 경우 출석일정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원활한 연락을 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자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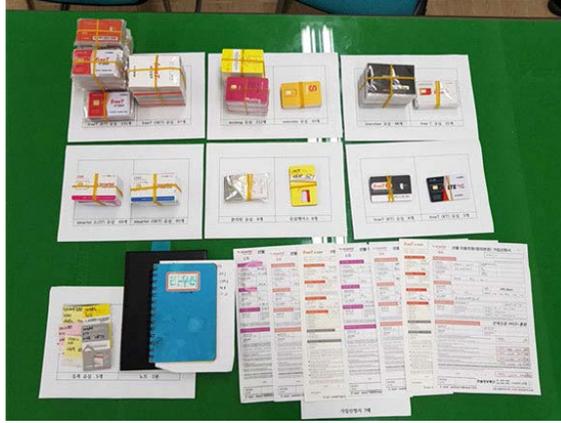
-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여권만 있는 외국인의 선불유심구입 관련 통신사 문의결과 <표 III-4>

통신사	답변
<b>LG U+ 고객센터</b> (2022-04-05-13:35:00)	<p>안녕하세요. 김00 고객님의~일상에 즐거운 변화, LG U+ 김수아 상담사입니다.</p> <p>'선불'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요. 문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p> <p>선불 휴대폰은 2G 서비스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21년 6월부터 2G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어 선불 휴대폰 또한 가입이 어려운 점 양해말씀 전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 지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p> <p>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만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p> <p>바쁘신 시간내어 문의주셨는데 글로 안내가 되다보니 속상한 제 마음을 모두 표현할 수 없어 정말 면목없습니다.</p> <p>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많지만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항상 힘쓰는 LG U+가 되겠습니다.</p> <p>김대권 고객님의, 궁금하시거나 당사 이용 중 불편하신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1:1 문의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b>KT 고객센터</b> (2022-04-04-14:02:43)	<p>반갑습니다. 김00 고객님의! kt 황윤정입니다.</p> <p>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선불 유심에 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p> <p>일반적으로 외국인 성인인 경우 명의자 본인께서 여권 지참 후 kt 플라자나 대리점 방문 시 선불로 개통할 수 있으며, 개통 후 9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b>SKT 고객센터</b>	<p>안녕하세요. 김00 고객님의 SK텔레콤 행복매니저 김주연 입니다.</p> <p>외국인이 외국인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등 회선 가입을 하려면 명의자 본인 방문시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 동포)이 필요합니다.</p> <p>※ 외국인의 경우 여권으로는 서류 인정되지 않습니다.</p>

### 자체 조사

### - 미등록외국인에게 유심칩 판매하여 처벌된 사례 (제주의 소리)

#### 불법체류자에 유심칩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유학생 딜미



▲ 압수된 유심칩 및 가입신청서.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법 유심칩을 판매한 휴대폰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 등이 딜미를 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있는 김모(51)씨와 이모(48.여)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여권을 스캔해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해 수십 개의 불법 유심칩을 만들고,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포털 사이트 'QQ', 메신저 'WeChat' 등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불법 유심칩을 판매했다.

김씨 등은 휴대폰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원가의 2배에서 많게는 4배씩 비싸게 받아 한화로 5만원에서 14만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유심칩 유통관련 수사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했던 중국인 유학생 쓰모(25)씨를 붙잡았다. 쓰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외국인 명의 대표폰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대표폰 판매사례를 추적하던 중 일부 통신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유심칩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정위원회 논의

- 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선불유심카드 구매가능하지만 통신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
-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발급하면서 신분증 대용으로 항시 지참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바, 국내 이동통신업체들도 ‘보호일시해제결정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적어도 선불폰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보호 중이던 난민의 경우는 여권이 만료되어도 본국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책 필요

## 조정위원회 제안

-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법무부에 제도 개선 건의하기로 함

---

## 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

### 진정 내용

- 2022년 2월 방역수칙이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주 2회 학생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위한 키트를 각급 학교에 무료 배포함
- 하지만 이주배경 학생들 중에 다문화위탁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등을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매주 원적 학교로 가서 받아와야 함

**자체 조사** - 경기도내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현황 <표 III-5>

**표 III-5 경기도 내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현황**

순번	지역	대안교육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고양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61, 4층	031-970-3020
2	김포	(사)한국청소년행복나눔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4(시우동)	031-8049-0026
3	부천	부천새날학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3번길 10, 4층	032-667-7480
4	수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	031-247-1324
5	시흥	나라얼학교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71번길11, 2층	031-317-0403
6	안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031-599-1770
7	안성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중북리 453-1	031-618-4144
8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믿음관 5층	031-870-3365
9	파주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107 청도웨이리코아 2층	031-954-0200
10	포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23	031-544-0615

**조정위원회 논의** -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대안교육 기관이므로 동일한 지원 필요

-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학교로 지원된 키트 중 위탁교육생 몫의 키트를 다시 대안교육기관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건강 유지 및 바이러스 예방 기회를 보장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

**조치** -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학생들에게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공해 줄 것을 건의 (국민신문고 2022. 4. 8)

##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4-0231365
신청일	2022-04-08 16:05:05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공여부 질의

**내용**

1. 혁신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3.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진정건 중 귀 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이 진정건에 대해 귀 청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진정내용  
- 다문화위탁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학생들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정해주시시오
- 사안개요  
- 2022년 2월 방역수칙이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주 2회 학생 자가진단을 위한 키트를 각 급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있음  
- 이주배경 학생들 중에 다문화위탁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등을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받고 있지 못함
- 쟁점사항  
-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 학생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주2회 원 소속 학교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수령해야 함  
- 개별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기관의 수업을 빠져야하고 단지 자가진

22. 12. 26. 오후 1:37

국민신문고

첨부 파일

단 키트를 받기 위해 원소속 학교를 주2회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방역원칙과도 맞지 않음  
 - 다문화위탁교육기관도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대안교육 기관이므로 동일한 지원 필요  
 -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학교로 지원된 키트 중 위탁교육생 몫의 키트를 다시 교육기관으로 배분할 필요 있음  
 경기도내 다문화위탁교육기관 현황.hwp

**답변**

- 경기도 교육청 답변 (2022. 4. 20.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4월 신속항원검사키트 학교 지원 사업대상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원적교가 있는 대안교육위탁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4월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 학생들의 키트 수령방법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원적교에 협조 요청하여 하교 시간 이후에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4-0299917  
접수일 2022-04-11 13:10:23  
담당자(연락처) 신지숙 (031-249-0295)  
처리에정일 2022-04-28 23:59:59

##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4-20 17:55:4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AA-2204-029991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요청 및 키트 수령 방법에 대한 변경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감염병 확산 예방과 안정적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진행 중인 4월 신속항원검사키트 학교 지원 사업대상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원적교가 있는 대안교육위탁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4월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탁교육 중인 이주배경 학생들의 키트 수령방법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원적교에 협조 요청하여 하교 시간 이후에도 수령해갈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신지숙 주무관 (☎031-249-0295) 또는 학생생활인권과 김영오 주무관(☎031-820-0643)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전세화 주무관(☎031-249-04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첨부 파일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selectPttPrintPopup.paid?pttnRqstNo=1AA-2204-0231365&instRcptSn=158602563&printType=B&pttn...> 2/2

## ⑥ 이주민들의 취약한 시정 및 복지 시책 관련 정보 접근성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오스트리아에서 10여 년간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내국인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부천시 등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시정 홍보지에 시정소식, 문화예술행사 등 유용한 소식이 많아 지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이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같은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준의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
- 시정홍보물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음 : 안산시의 경우 ‘안산하모니’라는 계간 잡지를 8개 국어로 발행하고 있으나 다수 이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있지는 못함
- 홈페이지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외국인 대상 주요 시정 홍보는 주로 현수막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

- 일부 지자체의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합뉴스)

뉴스룸 최신기사

## 수십억 들여 설치한 시정홍보 전광판 '애물단지' 전략

송고시간 2016-07-21 07:23



김인유 기자  
기자 페이지

**행자부가 관련법 개정해 불법 전광판 철거 지시  
지자체는 수천만~수억원 철거비 부담에 묵묵부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홍보용으로 설치한 옥외 전광판이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 기준에 부적합한 옥외 전광판을 철거하거나 적합한 곳으로 이전하라고 했지만, 철거비용만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쉽게 철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됐을 뿐 아니라 야간에 지나치게 밝은 빛 때문에 주민 민원의 빌미도 제공하고 있어 이래저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2005년 8월 시청사 옥상에, 2007년 12월 처인구 통일공원 삼거리·기흥구 녹십자 사거리·수지구 여성회관 앞에 각각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시는 이 전광판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행정 공지사항과 시정 홍보 영상 등을 상영하면서 시정 홍보 매체로 활용했다.

그러다 2015년 3월과 5월 이 4개 시정홍보용 전광판의 가동을 중단했다.

옥외광고물 업체에서 '용인시가 불법 전광판을 운영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항목 측정결과와 날씨 정보, 기상특보, 재난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 외에 지자체가 청사 밖에 설치한 전광판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청사 내에서도 한 개의 전광판 운영만 허용하고 있다.



시는 전광판 철거를 고려했지만, 한 개 철거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가동을 중단한 4개 전광판을 대형 태극기로 덮는 교육지책을 썼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제는 시민들이 전광판이 아니라 휴대전화만 쳐다보기 때문에 전광판의 시정홍보 효과가 거의 없고,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지금은 철거비용이 아까워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사 내에 설치돼 불법 시설물이 아닌데도 수원시는 최근 전광판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시는 2008년 9월 17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내에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양면 전광판을 설치했다.

당시 시정소식지가 선거법 위반에 걸려 발행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시정홍보 매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전광판으로 월 70건에서 100건 정도의 시정 홍보물을 상영하면서 나름대로 비용대비 만족할 만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

밤늦게까지 틀어놓는 전광판 홍보영상물이 지나치게 밝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빛 공해에 시달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전광판 운영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민민원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수원시가 유지관리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철거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LED 전광판 모듈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이다 보니 낡은 소모품을 교체하는데 매월 수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광판이 다양한 내용을 많이 전달할 수 있고, 일회용 낭비성 홍보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인 지금은 애플단지로 전략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있는 전광판도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옥외 전광판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전광판 계속 사용을 행자부에 건의했지만, 행자부는 이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기본 원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1 07:23 송고

### 조정위원회 논의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시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이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거나 중요한 정보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보망이 거의 모든 유형의 이주민들이 접속하는 곳이므로 이곳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SNS 이주민 기자단 활동을 활성화 및 확대시켜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 커뮤니티로의 정보 전달과 공유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정위원회 제안

- 현재 경기도에서 도내 언어 다양성 자원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언어적인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어야 함

## ⑦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 진정 내용

- 진정인들은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E-9)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구직 중인 노동자들임
- 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지만 건강보험료 청구고지서가 여전히 퇴사한 직장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신청 안내도 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었음
- 직장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보험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장기미납 시 체류자격에도 문제가 생겨 반드시 납부해야 함

### 자체 조사

- 진정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 계속가입자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의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 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 규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선단).

▶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위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임의 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63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서류 첨부 사유		첨부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제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임의계속가입 탈퇴**

-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상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위원회 논의

- 예전에는 건강보험 계속 가입 여부가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실직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
- 문제는 실직 상황에서 돈이 없고, 이 고지서가 퇴사한 직장(기숙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구직 기간 동안 본인의 납입 의사와 무관하게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됨
-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새로운 직장 입사 후 연체료까지 한꺼번에 납입 해야 해 부담이 커짐

## 조정위원회 제안

- 실직 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 가능함을 본인에게 실제 안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 나의제안확인

공유 북마크

#### 실직한 이주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안내

등록일시	2022.06.27
조회수	1
작성자	김대권
진행상황	답변완료
처리결과	불채택
답변일	20220713

#### [개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외국인 인권 시책 및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3. 본 센터는 2019년부터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지난 6월9일 열린 2022년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5.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월20일 까지 회신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신일자 조정 등 실무와 관련해서는 본 센터 김대권 팀장(031-492-9349)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실직한 이주노동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안내체계 개선 건의 실직한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체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 아래 - 이주노동자가 실직 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 가능함을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본인의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도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개선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사안개요 - 진정한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E-9)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여 구직 중인 노동자들임 -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지만 건강보험료 청구고지서가 여전히 퇴사한 직장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신청 안내도 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었음 - 직장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보험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장기미납시 체류자격에도 문제가 생겨 반드시 납부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예전에는 건강보험 계속 가입 여부가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실직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 - 문제는 실직 상황에서 돈이 없고, 이 고지서가 퇴사한 직장(기숙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구직 기간 동안 연체 -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보험료 연체될 경우 새로운 직장 입사 후 연체료까지 한꺼번에 납입 해야 해 부담이 됨 -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직장 가입자로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음

#### [개선사항]

이주노동자가 실직 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 가능함을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본인의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도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개선

#### [기대효과]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부담료 부담경감으로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체류자격상 불이익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음

## 답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2022. 7. 1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관리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단 국민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의께서 주신 의견은 안타깝게도 제안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하신 제안은 외국인에 대한 임의계속 가입 제도 안내 방법 확대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 외국인이 임의계속 가입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발송되는 안내문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안내문(취득안내) 2. 지역보험료 고지서 3. 임의계속가입 신청안내문 4. 임의계속가입 신청 SMS 안내(문자) 1~3의 우편물은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발송되며, 공단에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문자 안내문 추가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편의 측면으로 공단의 각종 통지서(안내문)를 네이버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 송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의계속가입자 관련 안내문도 전자문서 송달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자격부(033-736-2518)에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닥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관리자 드림

## 조치

-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관한 SMS 고지 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2022.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99)

### 정보공개 진행상황확인

공유 북마크

접수일자

2022.07.19

접수번호

499

### 청구인

이름(법인명)

김대권

주민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경기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010-3 -\*\*\*\*

전자우편

noii4pea\*\*@gmail.com

제목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관한 SMS 고지 현황 정보공개 청구

청구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가입자 총 수 2.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 3.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 4.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 총수 5.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 6.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답변**

- 접수번호 499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보 (2022. 7. 20.)

**◉ 답변내용**

결정통지  
부존재

내용

**◉ 공개방법**

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전자우편

공개일시

수수료  
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대권	생년월일(성별) (남)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경기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010-
	전자우편주소 noii4r :@gmail.com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가입자 총 수</li> <li>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li> <li>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li> <li>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 총수</li> <li>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li> <li>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li> </ol>
-----------------	---

이의신청 사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2022년 7월 20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청구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이의신청인

김대권 (서명) (인)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 처리절차



처리기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답변**

- 접수번호 508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통지 (2022. 7. 28)

- 1.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가입자 총수
  - 3.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
  - 4.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 총수
  - 6.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관련 안내 중 SMS를 통한 안내문 발송 총 건수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단이 이 건 정보를 따로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써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
  - 5. 2021년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경된 외국인 가입자에게 발송한 SMS 안내문 총 건수
- => 공단은 자격변동자에게 우편 및 디지털 안내(네이버 전자문서)를 시행중이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가입자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김태권 (주소: 경기도 )

접수 번호	508	접수 일자	2022-07-20
정보공개 청구내역	접수번호 498번 청구 비공개결정이 대한 이의신청을 첨부와 같이 신청합니다.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p>만영하십니까?</p> <p>1. '정보공개 결정 통 이의신청서'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li> <li>○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등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li> </ul> <p>2.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항목 1,3,4,5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가공·취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나,</li> <li>-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단이 이 건 정보를 따로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써</li> <li>-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요청 항목 2,6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은 지체인동자에게 우편 및 디지털 안내(네이버 전자문서)를 시행중이며</li> <li>- 직할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가입자에게 SMS(문자메시지) 발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li> </ul> </li> </ul> <p>3. 공단의 각종 통계 등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a href="http://www.rhis.or.kr/">www.rhis.or.kr/</a>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통계정보/ 건강보험 주요통계</li> </ul>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⑧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 진정 내용

- 진정인들은 각각 베트남과 네팔 국적 외국인노동자(E-9 비자소지자)로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청구됨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가령 124,770원을 내는 경우 15,300 원임)
-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로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장기요양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만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야 함. 게다가 국내체류 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출국 시 반납받을 수도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음

### 조정위원회 논의

-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당연 가입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자동 가입 방식을 고수 한다는 점은 불합리해 보임

### 조정위원회 제안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만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나의제안확인**



**이주노동자 장기요양보험료 자동청구 개선 건의**

등록일시	2022.06.27
조회수	3
작성자	김대권
진행상황	답변완료
처리결과	불채택
답변일	20220719

**[개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외국인 인권 시책 및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3. 본 센터는 2019년부터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지난 6월9일 열린 2022년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5.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월20일까지 회신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신일자 조정 등 실무와 관련해서는 본 센터 김대권 팀장(031-492-9349)에게 연락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사안개요 - 진정인들은 각각 베트남과 네팔 국적 외국인노동자(E-9비자)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청구됨

**[현황 및 문제점]**

2)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가령 124,770원을 내는 경우 15,300원임 -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로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장기요양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만6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야 함 - 게다가 국내체류 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출국 시 반납받을 수도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접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에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음 -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당연가입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해야만 가능함 - 사회보험의 납부체계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쉽게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개선사항]**

외국인 이주노동자(E-9 비자)의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부득이 임의가입으로의 변경이 어렵다면 만 65세 이전 출국 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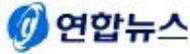
**[기대효과]**

매월 납부한 보험료가 정작 자신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었음을 외국인이 뒤늦게 알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임.

**답변**

-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2022.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관리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객님의께서 주신 의견은 안타깝게도 제안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하신 제안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D-3(산업연수)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저임금으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직장가입자로 제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의께서 주신 의견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관련 정부부처 및 업무부서 등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033-736-3621, 임경민 대리)로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님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관리자 드림



## "10년도 못 있는데...이주노동자, 65세에 받는 보험료 납부 부담"

송고시간 | 2022-06-15 15: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개최  
 "외국인 지역 건보료,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과중"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저희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 인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왜 내야만 하는 건가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경기도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A씨와 네팔 출신 B씨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인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20~30대가 대부분"이라며 "우리는 애초부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단체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하라'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관계자들이 2019년 8월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한 이주민에게 공정한 보험료 부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처럼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계의 불합리함 등을 다룬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위원장 이정호)'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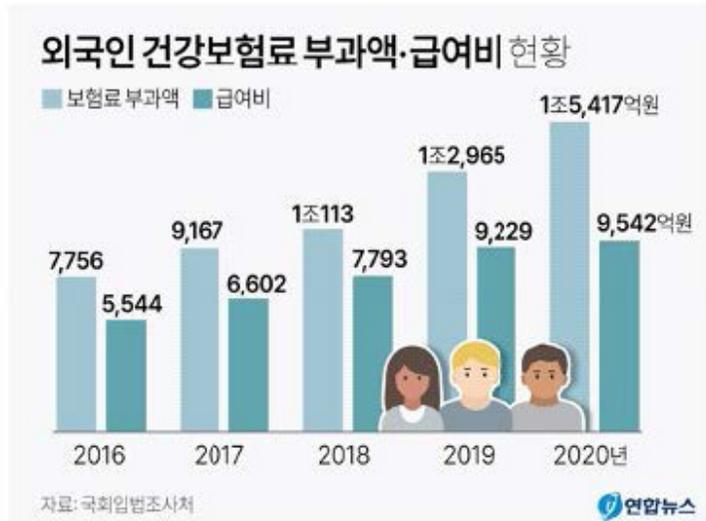
내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출범한 위원회는 외국인·다문화 인권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갈등 조정기구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 A씨와 B씨를 대신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경식 '글로벌 미션센터' 목사는 "65세가 되기 전에 귀향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다"며 "이들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당국은 외국인 본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던 방식을 2019년부터 '당연 가입'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1조5천417억원으로, 2016년(7천756억원)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장기요양보험료를 임의 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출국 시 환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일 기자. 이경아 인턴 20220425

**[그래픽] 외국인 건강보험료 부과액·급여비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도일 기자 = 4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문심명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건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기준 1조5천 417억원으로 2016년 7천756억원보다 98.7% 증가했다.

kmtc@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날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과중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식당가입사나 피부양사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이주노동자 신분임에도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 당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에 못 미칠 경우,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보험료는 11만8천180원으로, 내국인 등을 포함한 전체 월평균 부과액(9만7천221원)보다 21.6%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심명 국회입법조사관은 "내국인은 가구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그에 걸맞은 지역 건보료를 책정하는 반면에 외국인은 그렇지 않다"며 "외국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평균 미만이면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평균 이상의 경우 그에 걸맞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김대권 팀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내외국인 간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해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 [사설] 원칙 재정립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

인천일보 | 승인 2022.06.17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날 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불신 탓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고,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손보는 게 맞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6만명(직장 69만, 지역 57만)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1조5417억원이고,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해 지출된 총 급여비는 9542억원이다. 굳이 계산하면 흑자가 5875억원에 이른다. 내국인·외국인으로 나누어 흑자·적자를 따지는 일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느냐는 별 문제로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통계 숫자가 말해 준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2019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이 부과된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당수 지역가입 외국인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더구나 체납 정보는 법무부의 체류 연장 심사 자료로 연동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보험료는 일종의 '체류세'처럼 작용한다. 회사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 범위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친인척까지 치료를 받는 '암체치료'를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가족 구성 형태가 크게 다르다는 사정이 외국인에게는 왜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부분 역시 불합리하다. 현행 외국인 최장 체류가능기간은 9년8개월인데, 만 65세 넘어야 혜택을 받는 보험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원칙을 재정립할 때가 됐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구성원 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품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일보 webmaster@incheonilbo.com

인천일보  
다른기사 보기

## ⑨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중국 국적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 배우자 사망 후 1년씩 체류기간 연장하다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규제로 입국하지 못하여 체류자격연장을 하지 못하고 체류자격을 상실함
- 진정인은 2021년 2월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회복 신청하였으나 국내 생활기반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되었고, 불허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 중임

### 조정위원회 논의

- 진정인의 배우자는 2013년 자살로 사망하였고 사망한 배우자를 진정인이 직접 발견하여 정신적 트라우마 심각한 상태임
- 처분청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이 진정인의 체류 기간을 애초 1년씩만 부여한 것 부터 당사자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 압력을 가하기 위한 처사로 보임
- 진정인은 한국 입국 후 20년 동안 결혼초청비자를 받기 위하여 자진 출국한 3년 외에는 줄곧 국내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활기반이 없다는 사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음(배우자 사별 후 8년 동안에는 중국 7개월 한국 5개월 비율로 생활함)
- 입국이 불가능한 시기에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진정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주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 코로나 악화로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입국을 하지 못하여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한 처사임

### 조정위원회 제안

- 진정인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때 입국을 못한 점, 배우자의 비극적인 사망을 목격한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체류자격 회복을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접 권고 또는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청 내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한 의결을 권고

##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본센터)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권 시책 및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는 내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가 차별 없이 문화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다문화와 인권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열린 2022년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귀 재판부에서 판단 중인 2022누 사건(원고 곽 (GUO, 197. . . 생)의 사연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사연에 대해 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바,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고 곽 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6년 여름에 같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국인 남편 고(故): .를 만났습니다. 3년 여의 교제 끝에 혼인을 약속한 두 사람은 정식 혼인비자 발급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여간 각각 중국과 한국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8월에 원고 곽 이 결혼 이민(F-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식 혼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던 결혼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남편 고(故): .가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남편만 믿고 의지해 홀 홀 단신으로 한국에 온 원고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

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020년 8월에야 중국 정부에 남편 사망을 신고했을 정도로 남편이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갈 때마다 여권과 함께 꺼내 보이는 외국인등록증의 '결혼이민'이라는 단어만이 남편과의 기억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런 원고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지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는 남편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또 다른 상실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이 비록 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한 깊은 고려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겪었던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두 가지 상황은 원고의 의지와는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원고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뒤늦게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재입국기간 연장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거부할 만큼 큰 잘못인지는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해 바로 거부하지 않고 신중히 심사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결혼이민자(F-6-3)의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요구하지 않는 국내생활기반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것은, 원고가 처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너무 엄격한 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결혼이민자를 본격적으로 받아 들인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현재 20만 명 가까운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국민과 가정을 이루어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본인이 원해서든 아니든 배우자와 이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내국인 배우자와 이별한 결혼이민자들을 무조건 본국으로 등 떠밀지는 않았습니다. 원고처럼 이별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비록 우리 국민과의 혼인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우리 사회와의 인연은 유지하여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기반을 충실히 만들지 못하고 중국과의 왕래가 잦았던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남편을 잃게 된 사정과 그로 인해 받게 되었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고향에서 기묘해야 했던 점, 높은 노모의 신병 치료를 위해 부득이 중국에 장기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는 젊은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홀로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사정을 고려하셔서,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상처를 극복하며 어렵게 삶의 의지를 회복해 온 결혼이주여성에게 낙담하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4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위원명단 별첨)



주소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 031-492-9347-8 팩스: 031-432-9349 이메일: [gmhr@gmhr.or.kr](mailto:gmhr@gmhr.or.kr)

## ⑩ 이주민 가족의 키즈 카페 이용 제한과 부당한 민원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나이지리아 국적 난민 신청자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2016년생)으로 이주배경 아동 문화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키즈카페를 방문하였음
- 키즈카페에 입장을 하려 하자 카페 사장님이 기다리라고 하여 10분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음
- 사전에 키즈카페와 협의하고 총 8가정에 대해 이용 예약을 한 상황이었으며 먼저 도착한 6가정이 키즈카페를 이용 중이었음
- 계속 대기하는 상태가 길어져 사장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카페 안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아프리카 사람, 외국인이 여기와서 놀아도 되냐’ 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환불해 줄테니 들어오지 말라는 답을 들었음
- 항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카페 입장을 기다리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 불편한 상황이 전개됨
- 이후 키즈카페의 다른 이용자로부터 추가 민원이 발생하자 키즈 카페 측은 다른 2가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거부하고 이미 입장을 한 가정에 대해서도 일찍 퇴장 할 수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부당한 퇴장 압력을 행사함

### 조정위원회 논의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주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음
-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되어 사회적 기록으로 남겨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경기도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함
- 편의시설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상점 입구에 차별반대 스티커 부착 등)
-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권고함

### 조정위원회 제안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명의로 해당 키즈카페에 항의하고 언론에 기사화시켜 사회적 환기를 일으키기로 함

## 조치

- 조정위원회 제안에 대해 조치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구두 항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 ⑪ 교사의 강제 전학 제안으로 인한 이주배경 학부모의 스트레스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베트남 출신 외국국적 아동(9세)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되었으며,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2학년에 진학함
- 해당 학교는 고려인 밀집지역으로 재학생의 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중언어 강사도 러시아어만 지원하고 있음
- 담임교사가 학생관리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부모를 불러 '전학'을 제안함
- 학부모 입장에서는 직장과의 거리 등 여러 이유로 타지역 이사가 어려운데 담임 교사의 태도 때문에 아이를 현재 학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한 상태임

### 자체 조사

이 사안에 대해 C교육청 K장학사에게 자문을 구함.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문서 상으로 보았을 때 담임교사의 전학 권유는 전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지도교사를 배치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담임 교사가 전적으로 베트남 학생의 학습 지도를 책임질 수 밖에 없는데, 전학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수법은 아니므로, 교사가 그와 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함. 학교폭력 여부 등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함

자체 조사

- 자체 관련 언론보도

([서울신문] 다문화, 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2022. 3. 15.))

###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 서울신문

Clip source: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 서울신문](#)

###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남녀평등교육심의회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앞으로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따르게 된다.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바뀐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도 정했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는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고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 학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가 학생이 고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초·중등교육법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된 데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교육감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에 예외사항을 뒀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할 때 등이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생 수 200명 미만일 때 5~9명, 학생 200명 이상인 학교는 9~11명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달리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도 구체화했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사학법인 임원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교사와 직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과 함께 사립학교 인사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해 7개 대학에 학교당 7000만원 안팎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는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청구 절차가 포함됐다.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과 지원금액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을 자문하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한다.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김기중 기자

**조정위원회 논의**

- 공교육의 경우, 거주지 인근 배정이 원칙인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소수 언어 이용 가정이라는 이유로 저학년 아동에게 전학을 권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 담임교사가 아동의 전학을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음
- 학생 입장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큰 소임인 교사가, 오히려 타학교 전학을 권했다는 점에서, 해당 교사의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학교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또는 교육과 관련한 대원칙으로서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재확인 필요함
- 교사의 다문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이주민을 대상화시키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양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 콘텐츠가 재정비될 수 있어야 함
- 이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선배교사와 신입교사간의 멘토링, 워크숍 등을 통해 실질적이며 경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



그림 Ⅲ-1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⑫ 본국 사정으로 혼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미얀마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배우자 사망 이후 미성년 아들을 혼자 키워왔음
- 최근 유족연금 급여가 지급이 안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된 것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본국 방문 및 관련 서류 확보도 어렵다 했으나 서류 제출 완료 후에야 수급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음

**조정위원회  
논의**

-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령 시 재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혼인상태 확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결혼이주자의 경우 본국에서의 재혼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함
- 미얀마와 같이 내전 등으로 본국 방문이 어렵고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류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실정임
- 온라인을 통한 결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혼여부를 보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국경 통제(출입국) 업무가 핵심인 법무부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삼기 어려움, 그러나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같이 분쟁 중인 국가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지나 의욕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 확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일시적인 유예나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조치

- 국민연금공단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공문 발송  
(2022. 10. 18. 경기인권 22-087)



수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연금급여실장)

(경유)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2일 열린 2022년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 귀 기관과 관련된 갈등이 접수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첨부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검토 결과는 2022년 10월31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첨 부 : 2022년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1부. 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팀장(담당) 김대권

센터장 오경석

협조자

시행 경기인권 22-087 (2022. 10.18.)

접수 ( )

우(153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492-9347

전송 031-492-9349

담당자 e-mail gmhr@gmhr.or.kr

답변

- 국민연금공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2022. 12. 14. 연금사후관리부-891)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공단



수신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인권 22-087(2022.10.18.)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권고 사항>**  
 국민연금공단에 미안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해당국의 상황상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두거나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권고함

- 3. 먼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내외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외국인 사망자료(현재 미국 등 3개국과 MOU 체결로 자료교환 중) 등 61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여부 등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절차】 자료 제출 요구 → 미제출시 의무이행촉구 → 미이행시 일시중지 → 일시중지 후 1년 이내에 자료 미제출시 지급정지(일시중지 후 1년 이내 자료 제출시 미지급한 연금을 소급 지급하나, 1년 이후 제출시에는 제출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특히, 해외수급자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출생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있어 자료 제출기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 2022년 2분기 미안마 국적자의 경우 확인 대상자 2명이 모두 미안마에서 혼인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4. 현재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중국, 미국, 미안마 등 76개 국적자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혼인 제도나 혼인 여부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공단에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국민연금공단 이



전결 12/14

★주임 김은유 차장 전래용 부장 이숙영

협조자

시행 연금사후관리부-891 ( 2022. 12. 14. ) 접수 ( )  
우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전화 063-713-5853 전송 / onyou9858@nps.or.kr / 공개

국민연금/2022-12-14 09:28:13/연금급여실 연금사후관리부/65b8a014

정확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⑬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 진정 내용

- 홈택스나 위택스 서비스에 다국어 기능이 없어서, 연말 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비율이 압도적임.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부재로 일방적인 납세의 의무만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함
- 경우에 따라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여서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게 세금 관련 교육 및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무한 형편임

**조정위원회  
논의**

- 현재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LRsLBivH\\_vl](https://www.youtube.com/watch?v=LRsLBivH_vl))에 외국인들 위한 연말정산방법 안내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나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음
- 환급을 받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내국인보다 50~60만원씩 더 내는 경우도 있음
- 당장 다국어 기능 마련이 어렵다면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다국어로 된 연말정산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라도 마련되어야 함
- 이주노동자는 입국 시 교육 외에 사업주, 외국인지원센터, 세무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당연히 교육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임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 중 하나임
-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다면 개인이 우선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특히 사용자들의 뒷받침이 중요함

**조정위원회  
제안**

- 국세청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을 더 많은 언어로 제작해야 함. 고용허가제 MOU체결 국가(16개국)의 모든 언어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어렵다면 도입 규모 순으로 상위에 있는 국가 언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라도 제작될 수 있어야 함

## 조치

- 국민연금공단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공문 발송  
(2022. 10. 18. 경기인권 22-088)



수신 국세청장(기획조정관)

(경유)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2일 열린 2022년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 귀 기관과 관련된 갈등이 접수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첨부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검토 결과는 2022년 10월31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첨 부 : 2022년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1부. 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팀장(담당) 김대권

센터장 오경석

협조자

시행 경기인권 22-088 (2022. 10.18.)

접수 ( )

우(153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492-9347 전송 031-492-9349

담당자 e-mail gmhr@gmhr.or.kr

답변

- 국세청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요청 회신' 공문 (2022. 11. 1. 국제조세담당관-918)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다국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어 별로 홈택스를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함



# 국 세 청



깨끗한 세액  
함께 나누어

수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유)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요청 회신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인권 22-088(2022. 10. 18.)호와 관련됩니다.
- 우리 청은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Easy Guide), 영·중·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3개 국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련 신고안내 책자(한·영) 및 매뉴얼(영·중·베트남어), 동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통해 유형별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다국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어별로 홈택스를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

## 국 세 청



---

국세조사관	류명지	팀장	고인영	담당관	전일 2022. 11. 1. 반재훈
협조자					
시청	국제조세담당관-918	(2022. 11. 1.)	접수		
우 30126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a href="http://www.nts.go.kr">http://www.nts.go.kr</a>	
전화번호 044 204 2824	팩스번호 050 31152873	/ <a href="mailto:rmj2873@nts.go.kr">rmj2873@nts.go.kr</a>		/ 비공개(5)	

## ⑭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최근 미등록이주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 조치에 따라 G-1(G-1-81~83) 비자를 발급받았음
- 진정인은 그동안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주로 일용직만 알선 받을 수 있었고 소개료도 과다했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후 정규직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민간지원단체와 안산시 등에 문의한 끝에 고용센터를 가보라는 안내를 받아 방문하였음
-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구직 알선 대상자가 아니라며 직업소개를 거절당함

자체 조사

- 고용센터에서 구직알선 해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문의 (2022. 8. 26. 국민신문고 1AA-2208-0835782)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2. 12. 26. 오후 2:36		국민신문고
민원 인쇄		
<hr/>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8-0835782	
신청일	2022-08-26 10:45:35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hr/>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내용	<p>고용센터에서 구직알선 해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인권 시책 및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최근 본 기관에 문의가 접수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p> <p>현재 고용센터에서 구직알선을 해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E-9과 H-2 체류자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F-2, F-4, F-5 비자가 있고 G-1비자 중에도 취업이 가능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소개를 요청하여도 거절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	
첨부 파일		
<hr/>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8-0861196	
접수일	2022-08-26 11:04:35	
담당자(연락처)	김나영 (052-702-5163)	
처리예정일	2022-09-05 23:59:59	
<p><a href="https://www.epeople.go.kr/hep/ulilHistory/selectPttmPrintPopup_paid?pttnRqstNo=1AA-2208-0835782&amp;instRcptSn=162797359&amp;printType=B&amp;pttn...">https://www.epeople.go.kr/hep/ulilHistory/selectPttmPrintPopup_paid?pttnRqstNo=1AA-2208-0835782&amp;instRcptSn=162797359&amp;printType=B&amp;pttn...</a> 1/2</p>		

##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08-29 19:32:51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외국인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취업알선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자격(F-5)

○ 일반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정(E-6), 특정활동(E-7),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나. 귀 질의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직업소개를 거절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나,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수행 부서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 상기 가.항의 체류자격은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팀)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상담기관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개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취업알선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유선 등으로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고용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고잔동 520-1), ☎취업알선 031-412-6919, 6921, 6924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나영(052-702-5163)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조정위원회  
논의**

- G-1-81~83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도 영위할 수 있음
- 한국 체류 외국인의 공식적인 구직 알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 E-9과 H-2 체류자격으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구직이나 취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 소지자들과 G-1 비자 소지자 중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을 구직 알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함
- E-9과 H-2 외에 거의 모든 합법 체류 외국인들이 일자리에 대해 공적 알선을 기대할 수 없고 사적 알선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 파견, 중개수수료 편취,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낳는 방아쇠가 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  
제안**

- 법무부와 협조하여 E-9과 H-2 외에 취업활동 자격이 있는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도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

- 고용노동부에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요청’ 제목의 공문 발송(2022. 10. 20. 경기인권 22-086)하였고,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답을 받음(2022. 11. 23. 고용서비스정책과-6682)



수신 고용노동부장관(고용정책실장)

(경유)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2일 열린 2022년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서 귀 기관과 관련된 갈등이 접수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첨부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검토 결과는 2022년 10월31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첨 부 : 2022년 제3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1부. 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팀장(담당) 김대권

센터장 오경석

협조자

시행 경기인권 22-086 (2022. 10.18.)

접수 ( )

우(153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492-9347 전송 031-492-9349 담당자 e-mail gmhr@gmhr.or.kr

2022-11-23 14:24

From: 0508-8230-0000

To : 0314929349

Page: 002/002

저장 : 김인섭 / 고용서비스정책과 (2019-03-06 15:31:27)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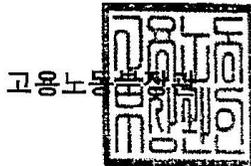
# 고 용 노 동 부

수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다양성조정소통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1. 관련: 다양성조정소통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검토 회신 요청(경기인권 22-086, '22.10.20.)
2. 귀 기관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취업알선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소영

행정사무관

김누리

팀장

김유리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민재

2022. 11. 23.

협조자

시행 고용서비스정책과-6682 (2022. 11. 23.)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338 팩스번호 044-202-8037 / bizou9535@korea.kr / 비공개(5)

## ⑮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강원도 강릉시 원목항에서 어업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올해 1월부터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표 Ⅲ-6>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1&onhunqueSeq=5464>

**표 Ⅲ-6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b>지원대상</b>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b>지원금액</b>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거부된 이유는 진정인의 거주지 주소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 진정인은 사업주가 제공해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기숙사 주소가 강릉시 일반 거주지에 있음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진정인이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기숙사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사업주는 기숙사가 근무지인 원목항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진정인 역시 마찬가지임

### 조정위원회 논의

- 제도의 취지가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어촌으로 범주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 이 제도의 취지가 단순한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라 농어업인 중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도심에 가까운 어업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음
-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본 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촉구해 볼 필요 있음

초치

- 국민신문고 질의 (“외국인 농어업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에 대한 질의”, 1AA-2208-0838076, 2022. 8. 26.)

22. 12. 26. 오후 2:41  
민원 인쇄

국민신문고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208-0838076
신청일	2022-08-26 11:46:01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외국인 농어업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에 대한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인권 시책 및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귀 공단에서는 올해 1월부터 내국인에게만 적용되었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외국인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8%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의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인 역시 거주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센터로 상담을 제기한 외국인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어선원으로 근무중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가 강릉시에 소재하는 까닭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이 외국인이 실제 어선원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컨데, 귀 공단이 지원대상에 주거기준을 둔 것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감면을 받고자 부정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인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공단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3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8-0862739  
 접수일 2022-08-26 11:46:01  
 담당자(연락처) 윤왕 (0337362543)  
 처리예정일 2022-09-05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2-09-01 18:05:1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농어업인 경감 관련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지침에 근거, 지원신청에 의해 적용 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단 직권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 드리며 이러한 기준으로 지원사업 주관부처에서는 거주지 제한(주민등록 소재) 등의 기준을 적용함에 공단의 재량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농어촌 경감  
 가. 목적: 1998년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요양급여를 받을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경감 실시

나. 기준

1) 지역요건(주민등록지 기준임)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selectPftnPrintPopUp.paid?ptnRqstNo=1AA-2208-0838076&instRcptSn=162799432&printType=B&pttn...> 2/3

22. 12. 26. 오후 2:41

국민신문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

2) 대상요건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 또는 농어업인이 있는 세대

- 사업소득 외의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제한없음
- 2010.1.1. 소득세법 개정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나)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인이 있는 세대

다)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 농어업인으로서 기존에 농어촌경감과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 있던 세대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 단, 공공주택지구에 신규로 주소 이전한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2021.10.14)에 따라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시행일: 2021.11.1, 2021.11월 보혐료부터)

3) 경감률 : 22%

\* 농어업인 지원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가. 목적: 2004년부터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나. 근거법령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3조
-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다.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어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0년부터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로 분리됨

1) 지역요건(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경작지기준이 아님)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라. 지원율 :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구간 차등지원(농어촌 경감 22% 별도경감)

가) 1800점 이하(28% 정률지원)

나) 1801~2500점(정액지원 기준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 지원)

다) 2501점 이상(미지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주소지 관할 외국인민원센터 031-5173-7600 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 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E-9비자)로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고공 작업을 주로 하는데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없이 일하고 있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 진정인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되었고, 노동부 신고 시 사업주로부터 해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진정인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주는 경미한 처벌이나 계도 조치만 받을 뿐임
- 한국인과 달리 안전한 작업환경을 찾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함

### 자체 조사

- 진정인이 보내온 작업장 환경

사진 Ⅲ-1 고공에서 안전모 없이, 용접모와 안전 벨트 없이 용접줄에 의하여 작업하는 모습



사진 Ⅲ-2 전신주 높이의 고공(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일하는 모습



사진 Ⅲ-3 공장 지붕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동료 필리핀 근로자들과 일하는 모습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 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호 (생략)

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  
논의**

- 작업장 안전 문제는 비단 외국인노동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
-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최근 SPC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조정위원회  
제안**

- 노동부 고시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고시 변경을 노동부에 적극 건의 하기로 함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2022년 제4차위원회(2022.11.2)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 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의 개정을 바랍니다.

### 1. 사안개요

- 진정인은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E-9비자)로 현재 근로하는 사업장에  
서 고공작업을 주로 하는데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없이 일하고  
있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첨부자료-1 참조)
- 진정인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되  
었고, 노동부 신고 시 사업주로부터 해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2. 문제점

- 진정인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주는 경미한 처벌이나 계도 조치만 받을 뿐임
- 진정인은 사업주를 신고 시 해고 등 불이익과 체류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할 의사가 없음
- 한국인과 달리 안전한 직업환경을 찾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
- 현행 고용허가제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첨부자료-2 참조)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2) 해당 노동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또는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1개월이 경과하도록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즉,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근무자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임

## 3. 조정 의견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의 제4조 4호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아래 개정안 예시 참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p><b>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b></p> <p>1~3호 (생략)</p> <p>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다.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b>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b></p> <p>1~3호 (생략)</p> <p>4.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가. 사용자가 벌금 이상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이 경우 벌칙이 부과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나. 사용자가 과태료 이상의 벌칙을 부과 받았으나 벌칙 부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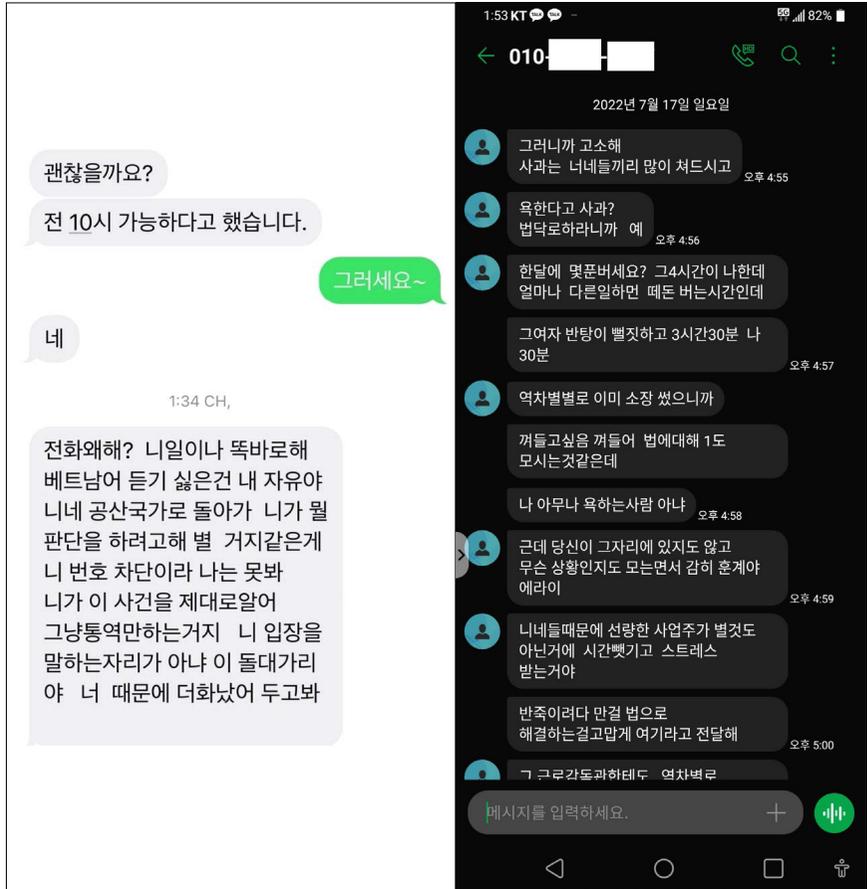
## ⑰ 통번역 상담사를 향한 폭언 및 욕설 피해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센터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하여 진정에 이르게 됨
- 피진정인은 임금체불 건으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노동자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업체의 관리자 A로, 노동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통역을 섭외해오라는 근로감독관의 요구로 진정인 센터의 베트남 통역상담사 B에게 통역을 의뢰
- 2022년 7월 15일, A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과 출석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베트남어가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름
-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트남 통역사 B가 기분이 나빠 ‘베트남어를 듣기 싫으시면 다른 통역사를 부르시라’고 말하자, A는 ‘내가 너를 통역하는 사람으로 불렀지 어디서 주제넘게 의견을 내느냐? 너가 뭔데 의견을 내느냐? 너가 왜 스스로 판단을 하느냐?’며 소리침
- 그 후에도 A는 ‘너는 한국인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B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사라짐
- 그 후 A의 언니라는 회사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역 똑바로 해 \*\*\*\*아’라고 욕을 함, 이후 A로부터 다시 욕설 문자 받음
- B가 너무 억울하여 남편에게 상의하였고 남편이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A에게 보냄
- 이에 대해 A가 B의 남편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냄
- 다음날 센터 활동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센터 활동가 C가 A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권유하였으나 A는 다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전화통화 종료 후에는 C에게도 욕설과 협박 문자를 다량 발송함

## 자체 조사

### - A가 보낸 욕설 및 폭언 문자 일부 캡처 이미지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보호관련 조항 <표 III-7>

**표 III-7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보호관련 조항**

관련 법령	조항
<p><b>「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b></p>	<p>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 4. 13.&gt;</p> <p>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b>「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b></p>	<p>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li> <li>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업무 매뉴얼 마련</li> <li>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li> <li>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b>「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b></p>	<p>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li> <li>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li> <li>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li> <li>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li> </ol>

[사업 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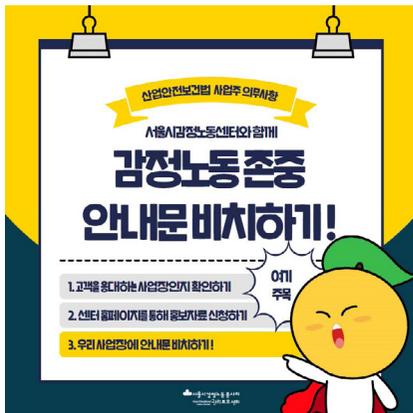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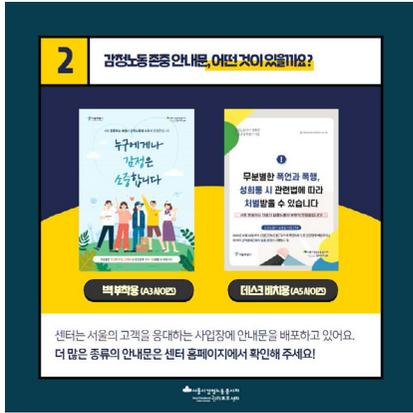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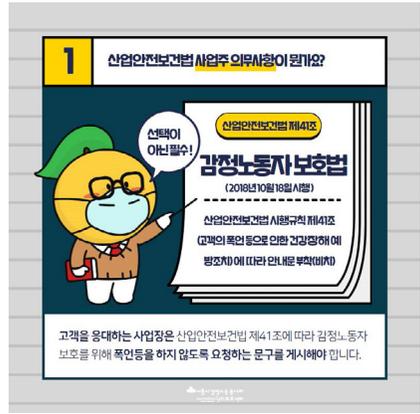
각 사업을 클릭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연구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	홍보사업	네트워크사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1:1 심리상담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운영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권역별 감정노동 상담치유	 감정노동 인식변화 광고 캠페인	 업무협약체결 (MOU)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집단치유 프로그램	 감정노동 컨텐츠 제작	 준비중입니다
 감정노동 정책포럼 및 설명회	 감정노동 온라인 교육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	 감정노동 공모전	 준비중입니다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소셜미디어 운영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자체 조사

- 서울시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업안내 및 홍보물

[홍보물]



## 조정위원회 논의

- 이런 사건은 비단 통번역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상담활동가들 모두가 한번쯤은 겪어봤을 내용이며 가해자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도 있음
- 이 사건에서 통역사의 대응도 적절하지는 않았음. 즉자적으로 본인이 직접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단체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했음. 통번역사들에게 이와 같은 폭언 및 욕설 민원인 대응 방법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 조정위원회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지원 기관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안내가 부족한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기관별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 ‘감정노동 인식변화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건의하여 외국인 지원기관에 특화된 감정노동 보호 컨설팅, 매뉴얼 제작, 감정노동 존중 홍보자료 등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 ⑱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 진정 내용

- 진정인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2014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정부 소재 한 업체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
-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중재로 합의하였으나 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됨
- 법률구조공단 통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얼마 후 사업주도 반소를 제기함
-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에 대한 판례가 있더라도 현재 월급명세서 등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합의조정 판결문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음. 당사자나 상담활동가 모두 조정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공단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진행함

자체 조사

- 진정인 조정신청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혹은 단체명) <span style="float: right;">알리 <del>김현수</del> (ALIRI KIMHYUNSU)</span>
	주소 <span style="float: right;">의정부시 비우로 99, 1층 (녹양동)</span>
	연락처
갈등의 상대방	성명(혹은 단체명) <span style="float: right;">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진수</span>
	주소 <span style="float: right;">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span>
갈등 발생 시간 · 장소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
갈등 내용	<p>신청인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2014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정부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 1천2백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 진정을 거쳐 2021년 6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사(이하 공단)에 의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확인한 체불금액은 사용자가 주장한 가불금액 560여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7,320,903원과 지연손해금입니다.</p> <p>공단 소송대리인(번호사 이 )은 처음에는 이 금액대로 소를 제기하여 2021년 7월9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반소를 제기하자 준비서면의 퇴직금 청구액을 3,789,953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시 공단 소송대리인과의 면담에서 신청인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가불금액은 이미 노동청에서 확인되어 공제되었고 추가로 공제할 금액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p> <p>그리고 2022년 5월 9일, 신청인은 공단 측으로부터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2022년 4월 2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공단 소송대리인이 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조정에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사용자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589,953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애초 청구액에서 470여만 원이 깎인(공단 소송대리인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금액에서도 120여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불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더이상 법적으로 다투 기회도 상실하였습니다.</p>
신청인이 바라는 해결방법	<p>공단 소송대리인이 신청인의 사건에 대해 보여준 태도와 처리방식은 외국인노동자가 제기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고 임의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의 공식적인 시파와 제발방지 대책마련 그리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합니다.</p>

2022년 10월 2일

신청인 알리 (서명 또는 인)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귀중 D. Immanuel S.

-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b>의정부지방법원 조 정 조 서</b>		2022.04.29 <b>02616</b>
사 건	2021가소 2(본소) 임금 2021가소 6(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알리 (주) 동(주) (주) 의정부시 1 층 (녹양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주) 양주시 남면 (주) (입암리) 대표이사 이 (주)	
판 사	이 (주)	기 일 : 2022. 4. 28. 15:45
법원 주사보	주 (주)	장 소 : 제9호법정(3신관1층) 공개 여부 : 공 개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주)		출석
피고(반소원고) 대표이사 이 (주)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9,953원을 2022. 5. 6.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반소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2.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215098732-72F11		1 / 3

자체 조사

-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문서 추적용 바코드입니다.



법원



www.scourt.go.kr  
문서 추적용 바코드

**청 구 의 표 시**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20,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 주사보

관 사

주. 선

이. 정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215098732-72F11
2 / 3
2 / 3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문 발송 (경기인권 22-095,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 2022. 11. 10.)



수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무총장)  
(경유)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126호)」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본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 귀 기관과 관련된 건이 있어 귀 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첨부한 문서를 참조하여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검토 결과는 2022년 11월30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 첨 부 : 1. 질의서 1부.  
2. 조정신청서 사본 1부.  
3. 법원조정조서 사본 1부.  
4. 다양성조정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팀장(담당) 김대권

센터장 오경석

협조자

시행 경기인권 22-095 (2022. 11. 10.)

접수 ( )

우(153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화 031-492-9347 전송 031-492-9349

담당자 e-mail gmhr@gmhr.or.kr

자체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의 회신 공문 수신 (구조정책부-3006,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송부", 2022. 11. 30)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신뢰받는 법률구조 플랫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신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참조)

제목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송부

1. 경기인권 22 - 095(2022. 11. 10.)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건에 대한 질의 회신 요청」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센터에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신서 1부. 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과장 이현정 변호사    정경원 구조정책부장    김성현 구조국장    전결 11/30 신지석

시행 구조정책부-3006 ( 2022. 11. 30. ) 접수 ( )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http://www.klac.or.kr

전화 054-810-1042 /전송 0505-057-7022 / tihsplus@klac.or.kr / 비공개(7)

## 회신서

### □ 사건개요

- 신청인(원고)은 2022. 3.경 이 사건 답변서 및 반소 대응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와 1 ~ 2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답변서 및 반소장 기재 상대방(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 6. 4. 1,200,000원 지급
  - 2015. 6. 5. 1,650,000원 지급
  - 2016. 10. 6. 2,221,850원 지급
  - 2017. 8. 21. 2,000,000원 지급
  - 2017. 12. 8. 1,711,100원 지급
  - 2019. 5. ~ 7. 퇴직금 미공제액 300,000원
  - 2020. 1. 3. 2,000,000원 지급
  - 2020. 4. 14. 1,200,000원 지급
- 상담 시 확인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2014. 4. ~ 2015. 5., 2015. 6. ~ 2016. 9., 2016. 10. ~ 2017. 10.)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됨)
  - (2015. 6. 4. **1,200,000원**) 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 확인되나, 입금명세서를 수령한 바 없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지 못함. 그러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기재 금액 및 지급시기와 일치함
  - (2015. 6. 5. 1,65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증거가 없음
  - (2016. 10. 6. **2,221,850원**) 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 확인되나, 입금명세서를 수령

한 바 없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지 못함. 그러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기재 금액 및 지급시기와 일치함

- (2017. 8. 21. 2,000,000원)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미 공제하였음
- (2017. 12. 8. **1,711,100원**) 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 확인되나, 임금명세서를 수령한 바 없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알지 못함. 그러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기재 금액 및 지급시기와 일치함
- (2019. 5. ~ 7. 퇴직금 미공제액 300,000원)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2020. 1. 3. 2,000,000원)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미 공제하였음
- (2020. 4. 14. 1,200,000원)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미 공제하였음
- 위 신청인의 의견을 토대로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어떤 명목으로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는 상담 시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의 분배 및 패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소송비용 부담 위험 (**유료대상자**)에 대해 고지하였습니다.
- 위 설명을 들은 **신청인은 담당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 **질의사항 1.에 관하여**

- 위 사건개요와 같이 담당변호사는 상담 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2016. 10. 6.자 **2,221,850원**과 2017. 12. 8.자 **1,711,100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청구금액 자체를 수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불금이 이미 노동청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 6. 4.분, 2016. 10. 6.분, 2017. 12. 8.분 지급내역은 공제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2.에 관하여**

- 위 사건개요와 같이 상담 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질의사항 3.에 관하여

- 신청인은 상담 시 본인의 거래내역서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하였는데, 거래내역서에 상대방으로부터 2015. 6. 4.자 1,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담 당시까지 상대방 측에서 위 1,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만일 상대방이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 부분도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상담 당시 담당변호사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위 1,200,000원을 공제하게 된 것입니다.

#### □ 질의사항 4.에 관하여

- 상담 당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부분이 증거가 명백하여 일부 패소할 수 있고, 일부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일부 패소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당시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 질의사항 5. 6.에 관하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우리 공단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 다만 법률구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께서 만족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더 나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의 회신에 대해 참고인 2차 서면 답변 (2022. 12. 6.)

사실확인서

의정부 EXODUS 박00 작성

□ 회신서의 사건개요 부분에서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가 상대방의 주장(입금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패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소송비용에 대해 고지했고, 신청인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2022.3.21. 변호사와의 면담 당시, 상대방의 입금내역을 설명하며 거래내역서와 사실관계를 맞춰본 것, 패소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은 맞습니다. 신청인 임 !과 활동가 박! !은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무효이며, 신청인의 월급에서 10만원씩 공제·적립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변호사는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판례가 있더라도 극소수이고, 현재 월급명세서 등 주장을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주장하기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입금내역과 가불금에 대한 사실관계만 파악하였고, 은행거래내역서와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하여 은행과 검찰청에 틀러 변호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면담 당시 신청인과 활동가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계속해서 주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패소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원만히 합의하고 싶거나 변호사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질의사항 3 답변에서 법률구조공단은 면담 당시 회사가 1,200,000원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이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 설명을 듣고 원만한 합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기원에서 공제하여 합의조정하였다고 합니다.

● 면담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서 해당 금액이 추가 공제될 수도 있다

고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주장하였듯이 그 이유로 원만한 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금 중간정산 완전 무효를 신청인의 주장에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담 과정이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에 변호사는 계속해서 ‘극소수의 확률이다’, ‘패소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을 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전망만을 얘기하고, 임금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인 회사를 옹호하는 느낌이 들어 변호사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했을 뿐, 합의조정 얘기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 **질의사항 4 답변에서** 법률구조공단은 패소가능성을 고지했고, 소송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따져보고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상담 당시 변호사는 패소가능성이 크고,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활동가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정기일 전에 조정에 대해 사전 설명한 사실도 없고, 사전에 동의를 얻지도 않았습니다. 면담은 단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당시 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임의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합의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월 21일 면담 후 은행 거래내역서와 판결문을 제출하고 변호사는 연락이 없었고, 사건 진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에 회사와 변호사가 합의한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보라는 전화만 법률구조공단 과정을 통해 받았을 뿐입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하려 했으나 임의조정으로 항소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계속해서 주장한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보지도 못하고 변호사 임의로 조정된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 **질의사항 5, 6 답변에서** 법률구조공단은 사전 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며 손해 배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서비스에 불만족한 문제가 아니고, 신청인의 대리인인 해당 변호사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화투이 낫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해서 주장한 신청인의 요구와 달리, 회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세할 부분을 공세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항소할 수도 없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인정하여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에 신청인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7,320,903원이라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귀중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금액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빼서 2,500,000원 정도만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000,000원에 가까운 차액에 대해 신청인은 여전히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항소를 할 수도 없어 포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이 차액에 가까운 금액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봅니다.

**자체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신에 대해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회신 (2022. 12. 10)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무효이며 다만, 노동자가 받은 금원에 대해 임금으로 볼 것인지 부당이득금으로 볼 것인지는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음에도 변호인이 그렇게 했는지 의문임. 재판상 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 합의된 금액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인 것에 대한 소명도 필요함

## 조정위원회 논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했던 사건이 성실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회 제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징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권고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언론에도 취재보도 요청

**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함 (경기인권22-111, 2022. 12. 27)

#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결 정

- 사 건 2022년제4차다소위3안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소송구조신청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대방과 조정 합의한 건
- 진 정 인 엠마누엘(Aller Emmanuel Sabidong)
- 피진정인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재승

### 주 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미지급된 퇴직금 7,320,903원을 반환받기 위해 2021. 6. 24.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의정부지사를 통해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체(이하 '상대방'이라 함)를 상대로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사 소속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재승(이하 피진정인 2)은 진정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도 없이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2,589,953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의조정에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애초 제기하였던 청구금액 7,320,903원보다 4,730,950원이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진정인 2가 조정한 금액은 2022. 3. 21.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3,789,953원과 비교해도 120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로써 진정인은 체불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못받게 되었다. 더욱이, 임의조정된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고 있어 더 이상 재판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도 상실하게 되었다.

## 2. 당사자 주장요지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는 2022. 3경 진정인과 1~2시간 정도 상담을 통해 상대방 사업체의 주장 중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어떤 명목으로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의 분배 및 패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소송비용 부담 위험에 대해 고지하였다.

2) 진정인은 상대방 사업체가 주장하는 가불금이 이미 노동청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 6. 4.분, 2016. 10. 6.분, 2017. 12. 8.분 지급내역

은 공제된 사실이 없었고,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진정인은 상담 시 본인의 거래내역서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하였는데, 거래내역서에 상대방으로부터 2015. 6. 4.자 1,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2는 상대방이 만약 이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 부분도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진정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의 상담 당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부분이 증거가 명백하여 일부 패소할 수 있고, 일부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일부 패소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당시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진정참고인의 추가의견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위원회의 조사결과, 외부자문위원의 자문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 가. 기초사실

진정인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2014. 4월부터 2020. 8월까지 의정부 소재 한 업체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1.

6. 24.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사를 통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다.

#### 나. 판단기준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의 제 조항은 사회권의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내외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 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2022. 3. 21. 면담 시 진정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 판단

피진정기관은 2022. 3. 21. 면담 시 상대방의 주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입증책임의 분배 및 패소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소송비용에 대해 고지했고, 신청인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피진정인 2가 면담 시 상대방의 임금내역을 설명하며 거래내역서와 사실관계를 맞춰본 것, 패소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임의조정을 통하여 소송을 최종 종결할 것이며 얼마에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진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2년부터 무효이며, 지급내역은 신청인의 월급에서 10만원 씩 공제, 적립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임의조정을 통한 최종적 해결에 진정인이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2) 120만원 공제에 대한 동의 여부 판단

피진정기관은 면담 당시 상대방이 1,200,000원을 진정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이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진정인은 이 설명을 듣고 원만한 합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의조정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면담 당시 진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서 해당 금액이 추가 공제될 수 있다고 피진정인 2가 설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전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피진정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정도만 협

조했을 뿐,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보인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진정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지연손해금 포기과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기관은 일부패소 가능성이 높고, 일부 패소시 진정인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보면, 상대방측에 사업체 대표이사만 기재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인이 패소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법률구조 사건의 경우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내용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역사 대동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임의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한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의사를 무시하였거나 최소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조정으로 마무리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법적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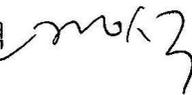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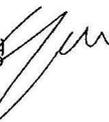
위원장 이정호 

위 원 연종희 

위 원 오경희 

위 원 김예정 

위 원 김용국 

위 원 김윤영 

위 원 김학래 

위 원 박정하 

위 원 송인선 

위 원 신상록 

위 원 이경숙 

위 원 쿠람아프탑 

초치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론화

23. 1. 2. 오전 8:54

연합뉴스



# "법률구조공단, 퇴직금 재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조정 합의"

송고시간 | 2022-12-29 17:16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손해배상·재발방지대책 권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구조공단)이 노동자의 동의없이 퇴직금 재판에서 임의조정 합의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외국인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E씨의 퇴직금 민사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당사자 동의 없는 임의조정 합의로 본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E씨는 2020년 8월 약 6년간 일한 사업체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중간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해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씨는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730여만원의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E씨의 의뢰를 받은 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E씨를 대리해 같은 해 6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사용자 측 주장대로 2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임의조정돼 종결됐다.

23. 1. 2. 오전 8:54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E씨는 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임의조정 합의에 대한 동의 등을 묻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E씨는 결국 외국인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했고, 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조공단에 E씨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했거나 최소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조정으로 마무리해 당사자가 법적 판단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조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배상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선 기관에 교육을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hc@yna.co.kr

# 인천일보

홈 > 사회 > 경기

## 법률공단, 외국인 노동자 동의없이 '퇴직금 합의' 논란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29

의정부지부, 민사소송 대리  
사측 주장 액수로 사건 종결

노동자, 도 인권센터에 진정  
센터,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



▲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모습.(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을 깎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 외국인 지원기관이 나서서 피해대책을 권고했다.

28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2020년 8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약 6년간 일한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간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A씨 진정으로 조사한 결과, 730여만원의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이에 그해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이하 공단)를 찾아가 법률구조를 의뢰했고, 공단은 6월 A씨를 대리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법원이 올해 4월 임의조정으로 종결했는데, 조정 금액이 250여만원에 불과했다. 사측이 주장했던 액수다. 게다가 A씨는 공단 변호사로부터 조정합의나 의사 여부를 묻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5월 초 사건이 모두 종결됐고 판결문을 찾아가라는 공단 직원의 연락만 받았을 뿐이다.

고민 끝에 A씨와 그를 도왔던 활동가 B씨는 센터에 진정을 넣었다. 센터는 지난 20일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열어 공단에 A씨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권고 결정서를 보면 “외국인 법률구조 사건의 경우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또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내용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역사 대동이 필수적”이라며 “당사자가 더이상 법적 판단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과거에 있던 판결 사례도 진정에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조정을 감행한 변호사 징계 건에 대해 “재판부 조정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룰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진정을 접수한 김대권 센터 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전면담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당사자도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는 패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 들었을 뿐 상대방 측 주장대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소액사건이고 외국인노동자라고 해서 당사자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오경석 센터 소장은 “언어소통이 어렵고 대부분 소액사건이 위주인 외국인노동자 사건일수록 당사자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려는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다문화 인권 분야의 민간, 공공,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김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그림 III-2 제4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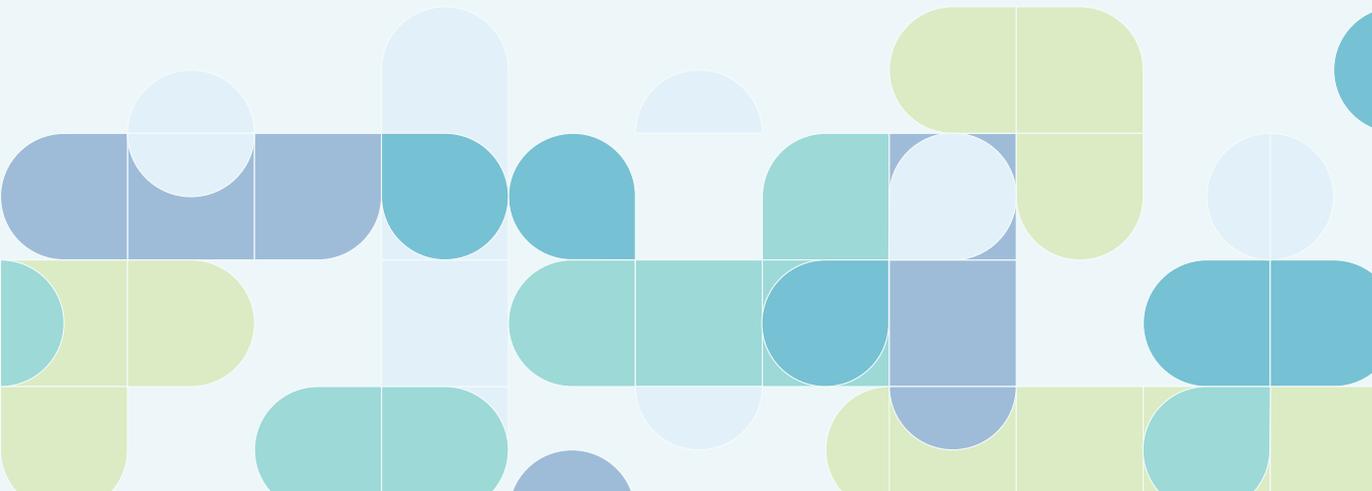
2022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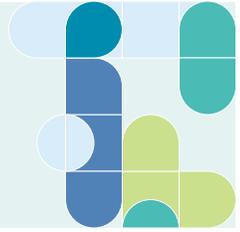
# IV

---

평가와 과제



## IV. 평가와 과제



2022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위 성과는

**위원들 사이의 팀워크 그리고 위원회 활동의 현장성 강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활동 분야, 지향성, 입장 등에서 매우 다양함.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학계, 법조계, 당사자, 주민 등 독자적인 전문성과 지향성을 가진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위원회는 전체 위원 연명으로 몇 차례나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함. 그것은, 다양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원 모두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제도와 관행의 부조리함과 불공정성이 명백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함. 위원회의 이러 한 문제의식은 몇 차례언론을 통해서도 공론화됨. (“10년도 못 있는데...이주노동자, 65세에 받는 보험료 납부 부담(연합뉴스, 2022.06.15.)”,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노동자에 ‘불합리’...경기도인권센터 ‘공론화 거쳐 고쳐야’(인천일보, 2022.06.15.)”, “[시설]원칙 재정립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인천일보, 2022.06.15.)”)

올해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조정 지원 활동 및 현장 단위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그리고 현장에서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 이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가, 이민 정책 담론과 이주민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임. 현장과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업을 통해, 이주노동자 연말정산 제도, 이주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농어촌 건강보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등 그 어느 기관에서도 거론하지 않았던 제도적 문제들을 최초로 공론화함.

올해 우리 위원회의 아쉬움은

**조정안건의 편향성 그리고 조정 결과의 비효율성**으로 요약됨.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원적인 조정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취지에 무색하게, 올해 우리가 처리한 안건의 대부분은 제도적 불합리성과 불평등성과 관련된 사안들이었음.

조정안건의 실효성은, 우리 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곧 개선 권고)을 위한 권한이 없다는 점과 연관되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개선 의견을 제안한 11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이 긍정적으로 수용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표 IV-1>

회차	안건	처리결과
1차	무료 PCR tes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쉼터 입소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관련 사업 건의 : PCR 검사 비용 문제로 수용불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이주배경 학생들	▶ 경기도교육청 질의 및 개선 건의 : 신속항원검사키트 학교지원사업에서 다문화 위탁기관은 비포함. 원적교가 있는 경우만 4월에 한해 수령 가능
2차	실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의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 현재 외국인등록증 주소지 및 휴대폰으로 안내문 발송중 (그러나 안내건수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 통보)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E-9 비자) 노동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청구 문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안 건의 : 불수용
	코로나19로 체류연장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취소 문제	▶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상고심 진행중
3차	본국 사정으로 혼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유족연금지급 거부	▶ 국민연금공단 제안 : 개선방안 마련 위해 노력
	연말정산 자료 제출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	▶ 국세청 제안 : 예산 미비 등 업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불수용
4차	G-1 체류자격 외국인이 배제되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 서비스	▶ 고용노동부에 개선 제안 : 법무부와 협의 중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 제안 : 공단직권 적용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서도 불허되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부 개선 제안 : 답변대기중
	법률구조공단의 당사자 동의없는 임금체불 조정안에 대한 일방적 합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답변대기중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과제는 우리 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적합한 우리 위원회만의 안건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조정 방식을 만들어내며, 그를 통해 제도, 관행,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만의 방안을 고안해내는 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음.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el. 031-492-9347 Fax. 031-492-9349 Web. [www.gmhr.or.kr](http://www.gmhr.or.kr)